

월간

재정포럼

2022. December_Vol.318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2

권두칼럼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 이경근

현안분석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 최성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 최인혁

정책토론포트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재무부,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02
| 이경근

현안분석

-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 최성은 08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 최인혁 26

정책토론포트

-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5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 - 재무부,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발표 외 64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OECD/IF(Inclusive Framework¹⁾)는 디지털세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세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며 2021년 10월에 필라 1과 필라 2에 대한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필라 1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기존의 국제조세의 기본원리로 통용되어 왔던 '고정사업장 과세제도를 대체 또는 보완할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을 의미하고, 필라 2는 'BEPS²⁾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에 OECD가 발표한 협상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은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필라 1).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³⁾ 비용공제 부인규칙⁴⁾ 등을 OECD/IF 회원국이 준수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필라 2).

이러한 발표내용에는 2022년 중에 필라 1과 필라 2의 세부쟁점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들을 국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합의와 계획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

1) 2015년 OECD/G20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년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OECD 주도의 국제적 회의체이다. 현재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의 조세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으나 각국 조세법령의 차이 또는 조세조약이나 국제적 과세기준 등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현저히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3) 자회사 미탈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는 규칙이다.
4)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탈세액을 자국에 납부하는 규칙이다.

는 필라 1이 시행되면 각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 또는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세금의 도입을 방지한다는 합의가 OECD/IF 회원국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전망

이상의 발표 이후 한동안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OECD/IF의 국제조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경우 향후 글로벌 차원의 필라 2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국제적 논의 결과를 지켜본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초의 낙관적인 기대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선 비교적 쉽게 도입이 예상되었던 필라 2의 경우에도 OECD/IF 제안에 대해 EU 내에서 완전 합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에서도 필라 2와 유사한 기존 법령을 OECD/IF 제안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아 내년 부터 필라 2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당초보다 시행 시기를 늦춘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발효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필라 1의 경우, 비록 OECD/IF가 큰 틀의 과세방안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세부방안(특히 기존에 각국이 징수해 왔던 원천징수세액을 새로운 과세권 배분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별로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OECD/IF는 2022년 6월경 필라 1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OECD/IF가 설령 2023년 중에 필라 1 합의 내용을 반영한 다자간 조세조약안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의석의 2/3가 찬성해야 하는 점, 미국 공화당은 필라 1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점, 그리고 필라 1이 시행되면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될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들이라는

.....
**최근 들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잠시 사그라들었던
 DST 입법 추진이
 일부 국가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
**수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DST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차별적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이다.**

점을 감안하면 필라 1에 대한 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잠시 사그라들었던 DST 입법 추진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 이스라엘, 탄자니아,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DST는 디지털용역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거래에 대해 자국 발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DST로서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인 과세대상 범위나 세율 등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DST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미국은 다시 「통상법」 Super 제301조를 적용하여 미국 기업에 DST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중국, 미국 등)들이 사실상 자국 기업에만 보조금 지급을 한정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머지않아 국제적 조세전쟁이 발발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앞에서 언급한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 전망은 거시적으로는, 최근 국제통상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및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반세계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적 경제환경 및 조세환경하에서 합리적인 국제조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DST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차별적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통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이중과세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가 현재 전 세계 10위권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제금융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small & open economy로서 환율의 등락에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특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정책기조가 국가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필자는 비록 국제적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존에 택한 국제조세 정책, 즉 OECD 등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국제조세 기준을 확립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일방적 DST 도입은 배격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 기업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유럽국가 등이 도입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을 채택하는 방안 또는 현지 진출국의 부당한 과세에 맞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KIPF**

.....
**비록 국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정부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채널을 통해
국제조세 기준을
확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일방적 DST 도입은
배격할 것을 권고한다.**





| 현안분석 |

■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전자담배 상품들은 소비자를 자극하는 트렌디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지속되면서 계속 변화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위해성과 과세기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다. 교정세(corrective taxation)로서의 전자담배에 관한 과세는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우호적 입장에서는 궤련형 전자담배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궤련담배에 비하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위해도가 낮으므로 발암 위험성 등도 상대적으로 낮고, 전자담배를 잘 활용한다면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론적 입장은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궤련담배와 유사할 뿐더러,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기존의 궤련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사용자(dual user)이므로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낮추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전자담배의 보건학적 위해성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전자담배가 궤련담배의 대체재(substitutes)인지 아니면 보완재(complements)인지 여부는 전자담배 과세에 함의하는 바가 매우 상이할 것이다.

반고에서는 고도 흡연자, 중도 흡연자, 소득계층별·세부그룹별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이중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담배 과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1> 담배 제세부담금 개정 주요 연혁

개정일	시행일	제세부담금 및 내용	세부내용
2010. 12. 27.	2011. 1.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전자담배 추가) 확대 1. 피우는 담배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
2011. 6. 7.	2011. 12. 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전자담배 추가) 확대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
2014. 12. 23.	2015. 1. 1.	담배소비세 -세율 상향	담배 전 종류 세율 상향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권련: 20개비당 641원→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3원→36원 다. 제3종 엽결련 1g당 65.4원→103원 라. 제4종 각련 1g당 23원→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638원 바. 제6종 물담배: 1g당 455원→715원 2. 씹거나 머금은 담배: '2. 씹는 담배'와 '4. 머금은 담배'를 통합했으며, 각각 1g당 26.2원, 232원 →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g당 16.4원 → 26원
		지방교육세 -세율 인하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교육세 세율 인하 -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2014. 12. 23.	2015. 1.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세율 상향	담배 전 종류 세율 상향 1. 권련: 20개비당 354원→841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525원 3. 파이프담배: 1g당 12.7원→30.2원 4. 엽결련(葉卷煙): 1g당 36.1원→85.8원 5. 각련(刻煙): 1g당 12.7원→30.2원 6. 씹는 담배: 1g당 14.5원→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g당 9원→21.4원 8. 물담배: 1g당 442원→1050.1원 9. 머금은 담배: 1g당 225원→534.5원
2014. 12. 23.	2015. 4.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포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항목을 포함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권련: 20개비당 594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1원 다. 제3종 엽결련 1g당 61원 라. 제4종 각련 1g당 21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바. 제6종 물담배: 1g당 422원 2.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215원 3.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
2016. 12. 27.	2017. 1.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연초 고품질 사용 전자담배) 확대 - 연초 고품질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품질 1g당 88원의 담배소비세 부과(제5조 제1항 마목)
2017. 3. 21.	2017. 4.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연초 고품질 사용 전자담배) 확대 - 연초 고품질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품질 1g당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017. 11. 16.	2017. 11. 1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과세대상(연초 및 연초 고품질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확대 - 권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g당 51원 부과
2017. 12. 26.	2018. 1. 1.	담배소비세 -세율 상향	권련형 전자담배 세율 상향함 -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권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
2017. 12. 30.	2017. 12. 3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세율 상향	권련형 전자담배 세율 상향함 -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권련의 89.1% 수준인 20개당 750원으로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교정세로서의
전자담배 과세는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정의함으로써,
 과세체계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형태로 안착했다.

I. 전자담배 과세 및 판매량 현황

1. 전자담배 과세 현황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2011년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정의하여 부과하면서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CSV 형태의 액상담배 위주로 유통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정의함으로써, 과세체계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형태로 안착했다. 전자담배 과세 도입 이후 2014년 궐련담배세가 인상될 때 전자담배의 세율도 함께 인상되는 등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에 대한 과세정책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과세대상에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추가되었다. 2019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시들해졌

<표 2>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비교

(단위: 원)

구분	궐련 (20개비당)	전자담배			근거법령
		니코틴 용액 (1ml당)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 (20개비당)	기타 유형 (1g당)	
담배소비세 (지방세)	1,007	628	897	88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지방세)	443	276	395	39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
개별소비세 (국세)	594	370	529	51	「개별소비세법」 별표
부가가치세 (국세)	409	409	409	409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소비자가격 ₩4,500 기준)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841	525	750	73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폐기물 부담금	24.4	0	24.4	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5	0	0	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합계	3,323	2,208	3,004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으나 시장에 재등장하기 시작한 액상형 전자담배(CSV)에 대한 세율개정이 시도 되었는데, CSV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 등과 더불어 세율개정보다는 사용중단 권고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참조).

현재 전자담배 과세는 액상형 전자담배, 궤련형 전자담배 및 기타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라는 세 가지 유형에 부과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부피(1ml)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궤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그리고 연초 고형물은 무게(1g)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궤련담배와 동일한 체계로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표 2> 참조).

2. 전자담배 판매량과 세입 현황

전자담배 판매량은 궤련형 담배의 시판과 더불어 급증하여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7년 약 2%에서 2020년에는 10.5%로 증가하였다. 2020년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세수는 약 2,772억원으로 전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97조원의 약 9.3%를 차지하였다. 2020년 담배소비세 세수는 약 3.58조원으로, 전자담배 비중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전자담배분 담배소비세수는 약 3,327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3> 담배 종류별 판매량(2014~2021년 하반기)

(단위: 백만갑)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	
일반 궤련담배	4,359.9	3,326.8	3,663.6	3,444.7	3,139.1	3,063.7	3,209.7	1,538.0	
궤련형 전자담배 ¹⁾	궤련형	-	-	-	78.7	332.0	363.1	379.3	210.3
	연초 고형물 ²⁾	-	-	-	-	-	3.7	0.9	0.04
액상형 전자담배	CSV	-	-	-	-	16.9	0.4	0.00	
합계	4,359.9	3,326.8	3,663.6	3,523.4	3,471.2	3,447.4	3,590.3	1,748.3	

주: 1) 히츠(PM), 네오스틱(BAT코리아), 핏·믹스(KT&G)

2) 네오(BAT코리아) 3pod = 1갑, 메비우스 포 플룸테크(JTI코리아) 5캡슐 = 1갑으로 산정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궤련형 담배의 시판과 더불어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한 결과, 전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7년 약 2%에서 2020년 10.5%로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성인 흡연율은 액상형이 2013년 1.1%에서 2019년 3.6%로 증가했고, 궤련형과 궤련형+액상형도 2018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담배 종류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2012~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궤련	15,487 (99.9)	15,347 (99.9)	16,135 (99.9)	24,734 (99.9)	31,311 (100)	28,881 (98.7)	26,173 (90.5)	25,615 (91.1)	26,897 (90.7)
궤련형 전자담배	0 (0)	0 (0)	0 (0)	0 (0)	0 (0)	359 (1.2)	2,747 (9.5)	2,379 (8.5)	2,769 (9.3)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 (CSV)	9 (0.1)	16 (0.1)	16 (0.1)	13 (0.1)	3 (0)	4 (0)	2 (0)	105 (0.4)	2 (0)
기타 연초 및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1 (0)
기타	0 (0)	0 (0)	0 (0)	9 (0)	5 (0)	3 (0)	2 (0)	1 (0)	2 (0)
합계	15,497	15,363	16,152	24,757	31,318	29,247	28,924	28,105	29,671

주: () 안 수치는 %를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II. 전자담배 흡연 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인 흡연율은 2013년 1.1%에서 2019년 3.6%로 증가하였고,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3년 2%에서 2019년에는 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성인 흡연율은 2018년 4.3%에서 2019년 5.1%로 증가하였으며, 성인 남성의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8년 7.8%에서 2019년 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궤련형과 액상형을 포함한 전체 성인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 6.5%로 증가하였다.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흡연율도 2018년 9.8%에서 2019년 11.0%로 증가하였다.

<표 5> 액상형 전자담배 성인 흡연율(2013~2019년)

변수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0.011 (0.002)	0.021 (0.003)	0.037 (0.004)	0.020 (0.002)	0.023 (0.003)	0.036 (0.004)	0.036 (0.004)
남성	0.020 (0.004)	0.039 (0.006)	0.065 (0.007)	0.038 (0.004)	0.039 (0.004)	0.063 (0.006)	0.063 (0.006)
여성	0.003 (0.001)	0.003 (0.001)	0.010 (0.002)	0.003 (0.001)	0.007 (0.002)	0.009 (0.002)	0.009 (0.002)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분석

<표 6> **꺼련형 전자담배 성인 흡연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전체	0.043 (0.004)	0.051 (0.004)
남성	0.078 (0.007)	0.088 (0.007)
여성	0.009 (0.002)	0.015 (0.003)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7> **전자담배(꺼련형+액상형) 성인 흡연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전체	0.056 (0.004)	0.065 (0.005)
남성	0.098 (0.008)	0.110 (0.008)
여성	0.013 (0.002)	0.020 (0.004)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꺼련형 전자담배와 꺼련담배 이중사용자의 비중은 2018년과 2019년 3.7%로 나타났는데, 꺼련형 전자담배의 성인 흡연율을 감안하면 2018년의 경우 전체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약 86%가 이중사용자이고 2019년은 약 73%가 이중사용자임을 알 수 있다.

1. 전자담배와 꺼련담배 이중사용자 현황

전자담배의 꺼련담배 대체성은 전자담배와 꺼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dual user)의 비율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꺼련담배를 동시에 피운다고 한다면 전자담배가 꺼련담배를 대체하는 대체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꺼련형 전자담배와 꺼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의 비중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모두 3.7%로 나타났다. 앞서 꺼련형 전자담배의 성인 흡연율이 2018년 4.3%이고 2019년 5.1%임을 감안하면, 2018년의 경우 전체 꺼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약 86%가 이중사용자이고 2019년에는 약 73%가 이중사용자라는 것이다. 이는 꺼련형 전자담배가 꺼련담배 대체재로서의 성격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사용자의 비중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반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와 함께
궤련담배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점은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가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궤련형 전자담배와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성인 이중사용자 비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궤련형 전자담배, 궤련담배 이중사용자	0.037 (0.004)	0.037 (0.003)
궤련형 전자담배만 흡연	0.007 (0.001)	0.015 (0.002)
담배만 흡연	0.174 (0.007)	0.165 (0.006)
궤련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자 비중	86%	73%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와 함께 궤련담배 대체재로서의 성격도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19년 1.5%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궤련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17.4%에서 16.5%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반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와 함께 궤련담배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을 통제하여야 하긴 하지만, 궤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율 증가가 궤련담배의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1년 들어 정부의 사용금지 권고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담배 시장의 역동적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다른 형태의 상품이 개발될 여지도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이중사용자 비중은 2013년 1%에서 2018년에는 약 3.2%까지 증가하였다. 이중사용자의 비중은 낮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궤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중사용자 비중은 궤련형 전자담배의 본격적 출시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8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성인 흡연자의 89%가 궤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궤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 비중도 2018년 약 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궤련담배와 전자담배 이중사용자를 궤련담배 중독성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흡연자 집단에 비해 하루 반 갑 이상에서

<표 9> 액상형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성인 이중사용자 비율(2013~2019년)

변수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액상형 전자담배, 일반담배 이중사용자	0.010 (0.002)	0.016 (0.003)	0.034 (0.004)	0.017 (0.002)	0.018 (0.002)	0.032 (0.003)	0.026 (0.003)
액상형 전자담배만 흡연	0.001 (0)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43 (0.005)
담배만 흡연	0.225 (0.008)	0.221 (0.007)	0.189 (0.007)	0.214 (0.008)	0.196 (0.008)	0.186 (0.007)	0.010 (0.003)
액상담배 사용자 중 이중사용자 비중	91%	76%	92%	85%	78%	89%	72%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0> 궤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성인 이중사용자 비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궤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사용자	0.024 (0.003)	0.012 (0.002)
궤련형 전자담배만 흡연	0.020 (0.002)	0.039 (0.004)
액상형 전자담배만 흡연	0.012 (0.002)	0.015 (0.002)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한 갑 이하를 피우는 흡연자 집단에서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2019년에는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의 수가 2018년에 비해 줄어들고 동시에, 하루 반 갑 이하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이중사용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중사용자에 대한 이러한 통계는 전자담배가 궤련담배를 어느 정도 대체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궤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성인 흡연율(2018~2019년)

(단위: %)

구분	2018			2019		
	전체 전자담배	궤련형	액상형	전체 전자담배	궤련형	액상형
하루 반 갑 이하(궤련)	23	21	22	29	28	25
반 갑 이상 한 갑 이하	55	57	54	50	50	53
한 갑 이상	22	22	24	21	22	22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의 수가 줄어들고 하루 반 갑 이하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이중사용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표 12>를 보면 대부분의 전자담배 흡연자가 현재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이고, 궤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에는 거의 흡연 경험이 있는 자만 궤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표 12> 전자담배 사용자의 궤련담배 흡연 현황(2013~2019년)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전자담배	현재 흡연자	80	80	83	81	80	83	68
	과거 흡연자	8	17	8	19	16	16	32
	비흡연자	12	3	9	0	4	0	0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흡연자	80	80	83	81	80	89	68
	과거 흡연자	8	17	8	19	16	11	31
	비흡연자	12	3	9	0	4	1	1
궤련형 전자담배	현재 흡연자	-	-	-	-	-	83	68
	과거 흡연자	-	-	-	-	-	17	31
	비흡연자	-	-	-	-	-	0	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한편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여부별 구성을 보면 전체 전자담배 사용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19년 0%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자담배 흡연자가 현재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궤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에는 거의 흡연 경험이 있는 자만 궤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흡연자의 비율도 2013년에는 8%였던 것이 2019년에는 3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과거 흡연자는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 흡연자 중 과거 흡연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단순히 전자담배 사용으로 흡연자가 금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흡연자의 금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궤련형 전자담배의 도입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계층별 전자담배 흡연 현황

담배세율 증가 시 논쟁의 여지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담배의 역진성(regressivity)이다. 대체로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별 흡연율 데이터에서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1분위 흡연율이 2분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2분위 이상에서는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

<표 13> 소득수준별 성인 남성 흡연율(2015~2019년)

변수명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0.408 (0.027)	0.403 (0.029)	0.423 (0.028)	0.399 (0.025)	0.399 (0.025)
2분위	0.373 (0.026)	0.436 (0.025)	0.424 (0.026)	0.404 (0.026)	0.404 (0.026)
3분위	0.414 (0.029)	0.384 (0.026)	0.363 (0.024)	0.349 (0.026)	0.349 (0.026)
4분위	0.384 (0.027)	0.408 (0.027)	0.368 (0.024)	0.337 (0.024)	0.337 (0.024)
5분위	0.327 (0.025)	0.343 (0.027)	0.275 (0.024)	0.294 (0.022)	0.294 (0.022)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1분위 소득계층의 흡연율 저감 강도가 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담배과세가 역진적이라는 논쟁도 있고, 반면 저소득층이 더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크다는 논의도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는 기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등 궤련담배와는 다르게 초기 기기값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함의가 다를 수도 있겠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를 살펴보면 1분위와 5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보다는 대체로 액상담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가용 가능한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를 보면,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늘어나고, 5분위의 흡연율은 4분위보다 낮기는 하지만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위별 특징은 성인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자담배의 경우 초기 기기 구입비 등의 이유로 기존 궤련담배와 같은 역진성이 존재한다고 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전자담배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궤련담배에 비해 더 비탄력적일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전자담배가 담배의 대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최적세율은 궤련담배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자담배의 가격탄력성과 대체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13>을 보면 2016년 이후 1분위 흡연율이 2분위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2분위 이상에서는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게 나타난다.

역상형과 꺾린형 모두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분위별 특징은 성인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표 14> 소득수준별 성인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2015~2019년)

변수명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0.042 (0.008)	0.019 (0.005)	0.018 (0.005)	0.031 (0.006)	0.031 (0.006)
2분위	0.038 (0.008)	0.020 (0.004)	0.022 (0.006)	0.031 (0.007)	0.031 (0.007)
3분위	0.045 (0.010)	0.018 (0.004)	0.022 (0.005)	0.042 (0.007)	0.042 (0.007)
4분위	0.043 (0.010)	0.019 (0.005)	0.024 (0.006)	0.041 (0.007)	0.041 (0.007)
5분위	0.021 (0.006)	0.027 (0.006)	0.027 (0.006)	0.037 (0.008)	0.037 (0.008)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5> 소득수준별 성인 남성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2015~2019년)

변수명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0.070 (0.015)	0.028 (0.008)	0.025 (0.008)	0.048 (0.010)	0.048 (0.010)
2분위	0.068 (0.015)	0.039 (0.009)	0.043 (0.011)	0.058 (0.014)	0.058 (0.014)
3분위	0.085 (0.018)	0.034 (0.009)	0.041 (0.010)	0.075 (0.014)	0.075 (0.014)
4분위	0.065 (0.017)	0.035 (0.009)	0.04 (0.01)	0.072 (0.014)	0.072 (0.014)
5분위	0.043 (0.011)	0.054 (0.012)	0.044 (0.011)	0.066 (0.014)	0.066 (0.014)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6> 소득수준별 성인 여성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2015~2019년)

변수명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0.012 (0.006)	0.009 (0.004)	0.011 (0.006)	0.015 (0.006)	0.015 (0.006)
2분위	0.010 (0.005)	0.002 (0.002)	0 (-)	0.003 (0.002)	0.003 (0.002)
3분위	0.004 (0.003)	0.003 (0.002)	0.004 (0.003)	0.008 (0.004)	0.008 (0.004)
4분위	0.023 (0.008)	0.003 (0.002)	0.008 (0.006)	0.009 (0.004)	0.009 (0.004)
5분위	0 (-)	0 (0)	0.011 (0.004)	0.009 (0.004)	0.009 (0.004)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7> 소득수준별 성인 전체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1분위	0.039 (0.007)	0.039 (0.007)
2분위	0.035 (0.007)	0.035 (0.007)
3분위	0.046 (0.008)	0.046 (0.008)
4분위	0.050 (0.008)	0.050 (0.008)
5분위	0.048 (0.008)	0.048 (0.008)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8> 소득수준별 성인 남성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1분위	0.064 (0.014)	0.064 (0.014)
2분위	0.064 (0.014)	0.064 (0.014)
3분위	0.085 (0.016)	0.085 (0.016)
4분위	0.090 (0.014)	0.090 (0.014)
5분위	0.088 (0.015)	0.088 (0.015)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표 19> 소득수준별 성인 여성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율(2018~2019년)

변수명	2018	2019
1분위	0.014 (0.005)	0.014 (0.005)
2분위	0.005 (0.003)	0.005 (0.003)
3분위	0.005 (0.003)	0.005 (0.003)
4분위	0.010 (0.004)	0.010 (0.004)
5분위	0.010 (0.004)	0.010 (0.004)

주: () 안은 표준편차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2019, 성인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전자담배의 경우 초기 기기 구입비 등의 이유로 기존 궤련담배와 같은 역진성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그간 해외 국가의 입장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간주하거나, 마약과 같이 금지항목으로 보는 등 매우 다양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많지 않았다.

III. 해외 전자담배 과세 사례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그간 해외 국가의 입장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간주하거나, 마약과 같이 금지항목으로 보는 등 매우 다양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많지 않았다. 필연형 전자담배의 출시 등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유형별 과세가 보다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전자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유럽 국가의 대다수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바레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케냐와 이집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및 남미의 에콰도르까지 약 46개국에서 필연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¹⁾ Fruits(2018)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서 필연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필연담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연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필연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환산하고,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고체형 전자담배의 무게를 필연담배 개비로 환산하여 세율을 마련하므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필연형 전자담배 세율은 대체로 필연담배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표 20> 해외 전자담배 과세 현황

구분	필연담배 (Cigarette)	가열식 전자담배 (HTP)	액상형 전자담배 (E-cig liquid)
알바니아	ALL 6,500/1,000개비	ALL 6,000/kg	ALL 10/ml
오스트리아	EUR 81.00/1,000개비 + 소매가 34.5%	EUR 136.00/kg	-
아제르바이잔	AZN 35.0/1,000개비	AZN 12.9/1,000개비	AZN 100/l
바레인	세전 가격의 100%	세전 가격의 100%	세전 가격의 100%
벨라루스	BYR 28.64~82.77/1,000개비	BYR 141.00/kg	-
불가리아	BGN 109/1,000개비 + 소매가 25% (최소: BGN 177/1,000개비)	BGN 233/kg	-
캐나다	CAD 0.72725/5개비	CAD 0.14545/개비	-
크로아티아	HRK 370.00/1,000개비 + 소매가 34% (최소: HRK 824/1,000개비)	HRK 800.00/kg	-
키프로스	EUR 1.10/20개비 + 소매가 34% (최소: EUR 2.43/20개비)	EUR 150.00/kg	EUR 0.12/ml
체코	CZK 1,790/1,000개비 + 소매가 30% (최소: CZK 3,200/1,000개비)	CZK 2,720/kg	-
덴마크	DKK 173.79/개비	DKK 1,300.9/kg	-

1) Vapor Products Tax, "Tax Data Center"(https://vaporproductstax.com/taxation-database)상에서 파악된 전자담배 과세국가임

<표 20>의 계속

구분	필련담배 (Cigarette)	가열식 전자담배 (HTP)	액상형 전자담배 (E-cig liquid)
에콰도르	판매가격의 150%	판매가격의 150%	판매가격의 150%
이집트	EGP 1/pack	EGP 1,400/kg	EGP 2/ml
에스토니아	EUR 145.60/1,000개비	EUR 97.10/kg	-1)
핀란드	EUR 7.95/개비 + 소매가 52% (최소: EUR 31.2/개비)	-2)	EUR 0.30/ml
그리스	EUR 82.5/1,000개비 + 소매가 26% (최소: EUR 31.2/1,000개비)	EUR 156.70/kg	EUR 0.10/ml
헝가리	HUF 26000/1,000개비 + 소매가 23% (최소: HUF 39300/1,000개비)	HTP: HUF 15/개비 Hybrid: HUF 70/ml	HUF 20/ml
인도네시아 ³⁾	IDR 525~865/개비	소매가 57%	소매가 57%
이탈리아	EUR 170/kg	EUR 63.32/kg ⁴⁾	EUR 0.127266/ml (니코틴 프리: EUR 0.084844/ml)
요르단	JOD 1.115~1.883/20개비 ⁵⁾	JOD 3 /200개비	CIF(Cost, Insurance & Freight) 200%
카자흐스탄	KZT 12,300/1,000개비	KZT 11,750/kg	KZT 8/ml
케냐	KES 2502.74/1,000개비	KES 9,734.45/kg	4,171.59/unit + 2,781.43/cartridge unit
키르기스스탄	KGS 2,000/1,000개비	KGS 700/kg	KGS 1.25/ml
라트비아	EUR 92.5/1,000개비 + 소매가 15% (최소: EUR 121.4/1,000개비)	EUR 160.00/kg	EUR 0.01/ml + EUR 0.005 per mg of nicotine
리투아니아	EUR 69.4/1,000개비 + 소매가 25% (최소: EUR 115.5/1,000개비)	EUR 113.00/kg	EUR 0.12/ml + EUR 0.05 per mg of nicotine
몬테네그로	EUR 50.00/1,000개비 + 소매가 32%	필련 1,000개비의 가중 평균 소매가 40% 수준/kg	EUR 0.9/ml
북마케도니아	MKD 1.353/개비 + 소매가 9% (최소: MKD 1.553/개비)	MKD 350.00/ml	MKD 2.7/ml
필리핀	PHP 50/pack	PHP 27.5/pack	PHP 10.5/10ml ⁶⁾
폴란드	PLN 228.10/1,000개비 + 소매가 32.05%	PLN 305.39/kg + 흡연 담배 가중 평균 소매가 32.05%	PLN 0.55/ml
포르투갈	EUR 101.00/1,000개비 + 소매가 14%	EUR 0.0837/g + 소매가 15%	EUR 0.32/ml
루마니아	RON 533.97/1,000개비	RON 423.59/kg	RON 0.55/ml
러시아	RUB 2,359/1,000개비	RUB 6,282/kg + RUB 52/device unit	RUB 14/ml + RUB 52/device unit
사우디아라비아	세전가격의 100%	세전가격의 100%	세전가격의 100%
세르비아	RSD 78.25/pack	필련 1,000개비의 가중 평균 소매가 60% 수준/kg	RSD 6/ml
슬로바키아	EUR 74.6/1,000개비 + 소매가 23% (최소: EUR 116.5/1,000개비)	EUR 132.20/kg	-
슬로베니아	EUR 76.951/1,000개비 + 소매가 22.899% (최소: EUR 120/1,000개비)	EUR 88.00/kg	EUR 0.18/ml
한국	KRW 1,007/20개비	KRW 44.85/개비	KRW 628/ml
아랍에미리트	소매가 100%	소매가 100%	소매가 100%
영국	GBP 262.90/1,000개비 + 소매가 16.5%	GBP 270.22/kg	-

우리나라의 경우
필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필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환산하고,
해외 국가의
필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대체로 필련담배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의 대다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체형 전자담배의
 무게를 궐련담배 개비로
 환산하여 세율을
 마련하고 있다.

<표 20>의 계속

구분	궐련담배 (Cigarette)	가열식 전자담배 (HTP)	액상형 전자담배 (E-cig liquid)
프랑스	EUR 63.5/1,000개비 + 소매가 55% (최소: EUR 336/1,000개비)	EUR 31.30/kg + 소매가 51.4% (최소: EUR 135.2/kg)	-
독일	EUR 98.2/1,000개비 + 소매가 21.69% (최소: EUR 165.22/1,000개비)	EUR 15.66/kg + 소매가 13.13% (최소: EUR 22/kg)	-
네덜란드	EUR 223.82/1,000개비 + 소매가 5% (최소: EUR 243.25/1,000개비)	EUR 160.91/kg	-
아일랜드	EUR 383.42/1,000개비 + 소매가 8.83% (최소: EUR 434.19/1,000개비)	EUR 301.43/kg	-
일본	JPY 6,802/1,000개비	JPY 8,502.5/kg ⁷⁾	-
미국	USD 50.33/1,000개비 (중량 파운드 이하)/ USD 105.69/1,000개비 (중량 파운드 초과) -주정부 세는 주별로 상이	궐련담배와 동일	주별로 상이
스웨덴	SEK 1.6/개비 + 소매가 1%	SEK 1,957.00/kg	SEK 2,000/l
스페인	EUR 24.7/1,000개비 + 소매가 51% (최소: EUR 131.5/1000개) ⁸⁾	소매가 28.4% (최소: EUR 22.00/kg)	-

주: 1) EUR 0.2/ml였으나, 2021년 4월~2022년 12월까지 면제
 2) 핀란드에서 HTP는 smokeless tobacco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금지됨
 3) 인도네시아의 담배소비세는 담배 종류(SKM, SPM, SKT) 및 생산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매겨지며, SKM은 machine-rolled kretek cigarettes, SPM은 white cigarettes, SKT는 hand-rolled kretek cigarettes을 지칭. 해당 수치는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SKM을 기준으로 작성
 4) 가열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소비세수정조항」 제39조 제3항에 따라 일반담배(cigarettes)와 동일한 양에 대한 소비세 부담의 50%로 설정되어 매년 상이하하며(The amended provisions, in particular article 39-terdecies, paragraph 3, states that inhalation tobacco without combustion shall be subject to an excise tax set at 50% of the excise burden on an equivalent quantity of cigarettes with reference to the weighted average price of one kilogram (i.e. 1000 sticks) of conventional cigarettes), 해당 수치는 20년 기준 1,000개 스틱의 수치이며, 1pack 기준으로는 €1.27임
 5) 요르단 담배 소비세: 0.57JOD/20개비 + 종가세(0.545JOD(20개비 가격이 1.5JOD 미만) ~ 1.315(20개비 가격이 3.25JOD 이상))
 6) 필리핀에서는 용량에 따라 과세금액이 상이. 0~10ml: 10.5PHP; 10~20ml: 21PHP; 20~30ml: 31.5PHP; 30~40ml: 42PHP; 40~50ml: 42.5PHP; 50ml 이상: 42.5PHP + 매 10ml마다 10.5PHP 가산
 7) 일본에서는 가열식 전자담배(加熱式たばこ)는 0.4g당 일반 궐련담배 0.5개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일본 「담배세법」에 따라 담배세의 과세표준은 제조 담배 개수로 하며, 담배세의 세율은 1,000개비당 6,802JPY임. 따라서 가열식 전자담배는 약 8,502.5JPY/kg로 과세함
 8) 만일 1,000개비 가격이 EUR 196 이하라면, 과세 최소기준은 EUR 141/1,000개비
 출처: Ulrik Boesen, "EU Member States Pushing EU-wide Vapor Tax," June 3, 2020(<https://taxfoundation.org/eu-vapor-tax/>); Tax Data Center(<https://vaporproductstax.com/taxation-database/>, 검색일자: 2021. 10. 13.); European Commision, "Taxes in Europe Database v3"(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Search.html, 검색 일자: 2021. 10. 14.);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Part III - Manufactured Tobacco," 2021. 각 나라 정부 국제법 및 소비세법 사이트 바탕으로 저자 정리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자담배 판매량은 궤련형 전자담배의 출시와 더불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위해성 논란으로 사용금지를 권고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제품 시장이 상당히ダイナミック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대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궤련형 전자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들이 궤련담배와 동일한 위해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여, 궤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결정함에도 궤련담배로 일련의 환산과정을 거친 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궤련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대표 궤련담배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다. 담배산업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기업에 의해 통제되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궤련담배 및 궤련형 전자담배 가격도 일종의 가격규제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나 일반 소비재 및 중독재 과세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EU 회원국 및 선진국들의 전자담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외 국가들도 이전과 달리 본격적인 전자담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Bloomberg Survey 나 Fruits(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궤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궤련담배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세는 궤련형 전자담배를 궤련담배와 동일하게 보고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주정부세는 주정부에 따라서 궤련형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로 궤련담배와 동일하게 환산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 등 전자담배에 대한 적정세율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서는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은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 및 궤련담배의 건강위해도, 궤련담배와 전자담배의 대체성과 궤련담배의 위해도 저감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자담배가 궤련담배의 대체재라고 한다면 전자담배의 대체성이 높을수록 적정세율이 낮을 것이다. 반대로 전자담배가 궤련담배의 보완재라고 한다면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은 높을 것이다.

전자담배와 관련한 일련의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들이 대체로 기존 흡연자이면서 궤련담배의 가격이 높아지면 전자담배 사용이 늘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독점이며 공기업이었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궤련담배 및 궤련형 전자담배 가격도 가격규제 형태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나 일반 소비재 및 중독재 과세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현재 흡연자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궤련담배
금연효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전자담배 세율이
궤련담배보다 낮을 경우
금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어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 이후 궤련담배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경우 궤련담배와 전자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면서 궤련담배 총흡연량도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궤련담배 세율이 증가하고 전자담배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 전자담배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궤련담배 금연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전자담배 사용 현황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궤련형 전자담배 도입 이후 최근 들어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은 전자담배의 궤련담배 금연효과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이중사용자 비율이 매우 높고, 이중사용자의 경우 성인의 전자담배 흡연이 궤련담배 흡연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현상은 궤련담배와 전자담배의 보완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자담배의 세율이 궤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담배와 궤련담배 간의 가격대체성이 존재하고,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현재 흡연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궤련담배 금연효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대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자담배 세율이 궤련담배보다 낮을 경우 금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자담배와 궤련담배가 동일한 선택지에서 선택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궤련담배 흡연의 입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이중사용자가 금연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중 흡연 상태에 고착하는 경우가 금연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 많다면, 전자담배의 세율은 궤련담배와 동일하거나 높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자담배 세율이 궤련담배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야 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은 가격정책 이외의 효과적 규제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자담배는 궤련담배와 달리 초기 기기를 구입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고정비용을 감안한다면 궤련담배에 비하여 실제 부담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전반적인 흡연율을 고려한다면 전자담배의 가격대체성이 존재하고 전자담배의 위해도가 궤련담배보다 높지 않다면, 최적 전자담배 세율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서처럼 전자담배 세율은 궤련담배보다 낮을 것이다. 또한 전자담배의 궤련담배 금연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면 전자담배의 최적세율은 궤련담배보다는 낮을 것이다.

현실에서의 전자담배는 궤련담배 금연효과도 존재하고, 청소년에 대한 입문 효

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 이중사용자나 이중사용자의 총흡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러한 상이한 효과와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전자담배와 궤련담배의 대체성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각 해당 법령 참조.

기획재정부,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9.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Part III - Manufactured Tobacco,” 2021.

European Commission, “Taxes in Europe Database v3,”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taxSearch.html, 검색어: Manufactured Tobacco, 검색일자: 2021. 10. 14.

Fruits, Eric, “Vapor products, harm reduction, and taxation-Principles, evidence, and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Center for Law&Economics, 2018.

Ulrik Boesen, “EU Member States Pushing EU-wide Vapor Tax,” Tax Foundation, 2020.

Vapor Products Tax, “Tax Data Center,” <https://vaporproductstax.com/taxation-database/>, 검색일자: 2021. 10. 13.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론적 모형과 현실의
여러 상이한 효과 및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¹⁾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ik@kipf.re.kr)

I. 들어가며

코로나19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했으며,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상당하다. 2020년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였는데,²⁾ 이는 1998년 4분기(-3.8%)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업률의 경우 2020년 2분기에 4.4%를 기록, 2021년 1분기에는 5.0%까지 상승하였으며,³⁾ 동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의 경우 각각 10.1%(2020년 2분기) 및 9.9%(2021년 1분기)로 집계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제 궤적의 밑그림이 주어진 상황에서, 본고는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산업별 실업자 수 및 빈 일자리 수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 동안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추적·검토하고자 한다. 산업 미스매치(mismatch)는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 정보 부족, 기술 수준 불일치 등의 마찰적 요인에 의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저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지운(2017) 및 황수빈·박상순(2021)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지운(2017)의 경우 분석 기간이 2009~2017년으로 현시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비교적 최근 연구인 황수빈·박상순(2021)의 경우에도 2020년 4분기까지로 분석이 제한되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⁵⁾ 요컨대 2022년 상반기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하고 그 변화 추이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2022년 12월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의 수집·정리를 위해 애써준 이희선 연구원에게 저자는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2) 전년 동기 대비(한국은행, 「국민소득」)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미스매치는 학력, 지역 등의 차원에서도 정의될 수 있는데, 미스매치 정의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김지운(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까지 희소한 셈인데,⁶⁾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동 시장 정책 설계 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이후 제Ⅲ장에서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을 위한 방법 및 자료를 소개하고,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업별 매치 효율성, 최적 구인배출 추정 결과를 차례로 제시한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노동시장 내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Ⅱ. 노동시장 현황

본 장에서는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면적으로 파악·진단해 보고자 한다. 양적 측면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의 상황을 우선 점검한 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현황을 추가로 검토한다. 질적 측면의 경우에는 최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진단하도록 한다.

1. 양적 측면

가. 전체

경제 내 노동수급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⁷⁾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악화되기 시작한 노동수급 상황이 2021년 1월 무렵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그림 1]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과 2020년 3월 사이 곡선상의 급격한 우하방 이동이 목격되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곡선 자체의 우상방 이동 양상이 감지된다. 2021년 1월 이후에는 곡선상 좌상방 이동 및 곡선 자체의 좌하방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경기 확장기 내

본고는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산업별 실업자 수 및 빈 일자리 수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 동안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추적·검토하고자 한다.

5) 황수빈·박상순(2021)의 경우 추정 시 사용된 매치 탄력성 값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김지운(2017)에 보고된 추정 결과와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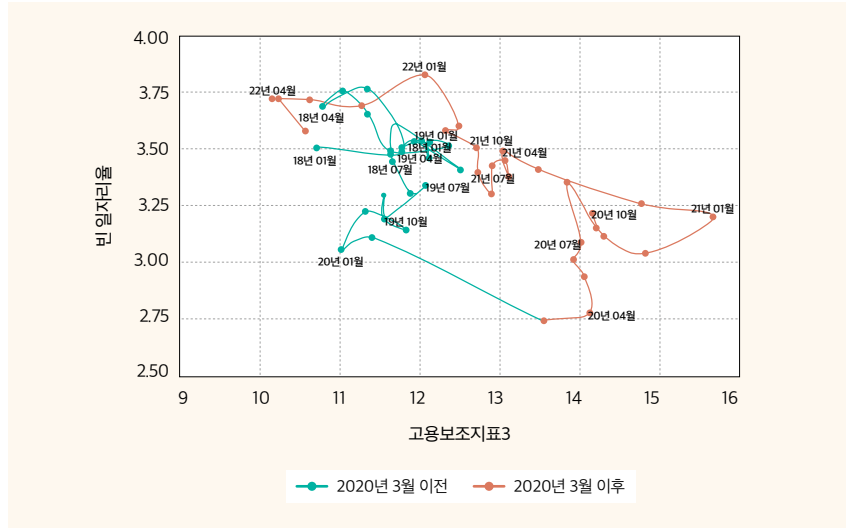
6) 물론 2022년 12월 현재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박세정·강민정(2021), 송상윤·김하은(2021), 오삼일·이상아(2021), 오삼일·이종하(2021), 유진성(2021), 이기쁨(2021), 함선유(2022) 등을 언급할 수 있다.

7) [그림 1]에 제시된 베버리지 곡선은 일반적으로 실업률([그림 1]에서는 고용보조지표3)과 결원율([그림 1]에서는 빈 일자리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 내 노동수급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악화되기
 시작한 노동수급 상황이
 2021년 1월 무렵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2018년 1월 ~ 202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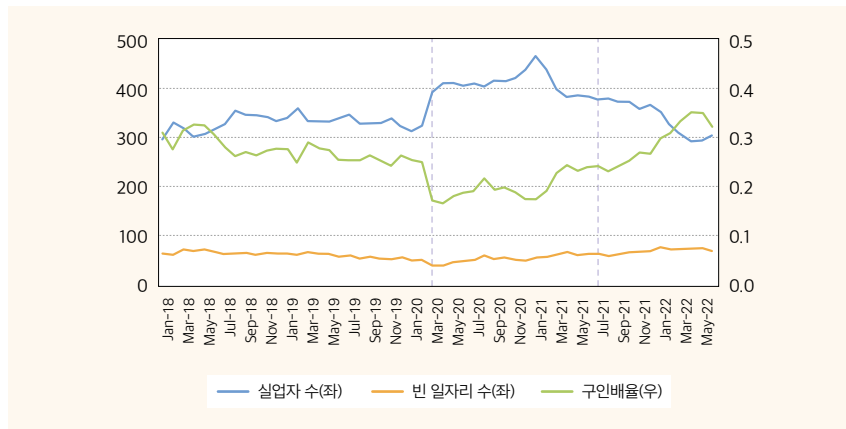
(단위: %)



주: 1.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확장경제활동인구
 2. 빈 일자리율 = (월말 빈 일자리+월중 채용)/확장경제활동인구
 3. 두 지표 모두 계절 조정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실업자 수^{1), 2)}, 빈 일자리 수^{1), 3)}, 구인배율⁴⁾의 추이: 2018년 1월 ~ 2022년 6월

(단위: 만명, 배)



주: 1) 월별 시계열 자료로서 계절 조정됨
 2)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합
 3) 월말 빈 일자리 및 월중 채용의 합
 4) 구인배율은 빈 일자리 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값을 의미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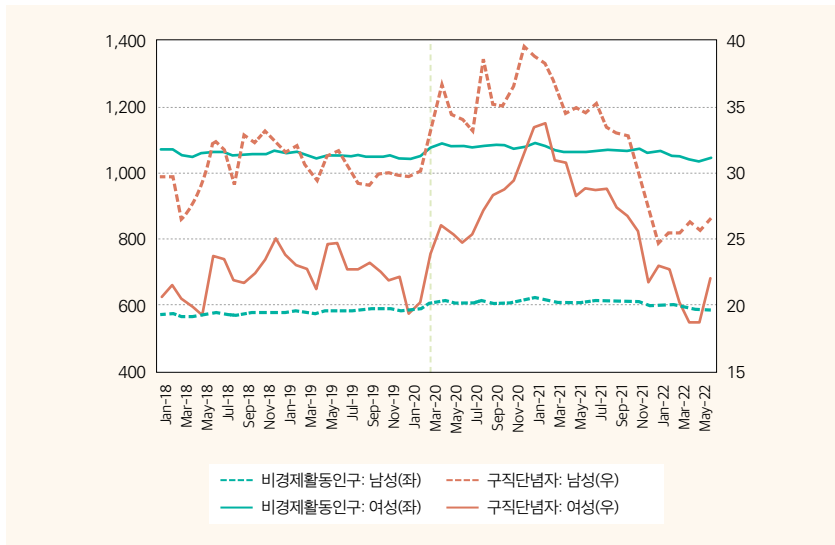
지 회복기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베버리지 곡선에서 관찰되는 노동수급 변화 양상은 동 기간 구인배율⁸⁾의 추이에서도 목격되는데,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실업자 수 증가와 빈 일자리 수 감소가 맞물려 0.2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 이후 회복세가 진행되어 2022년 6월 현재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¹⁰⁾ 규모 역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6월 현재 대체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데, 2022년 6월 현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예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예년 수준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한편 남성 구직단념자의 경우 2022년 6월 현재 예년보다 적은 수로 집계되고 있는 반면, 여성 구직단념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 규모 역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6월 현재 대체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¹⁾ 수 추이²⁾: 2018년 1월 ~ 2022년 6월

(단위: 만명)



주: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로 정의됨

2) 계절 조정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8) 대표적인 인력수급 지표라 할 수 있는 구인배율은 빈 일자리 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구인배율이 높아 질수록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 수가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구인배율의 상승은 통상 구직난 완화로 이해된다.

9) 2015~2017년 동안의 베버리지 곡선 움직임, 실업자 수·빈 일자리 수·구인배율 추이는 황수빈·박상순(2021)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10)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을 단념한 자([그림 3] 주 1) 참조)

최근 5년 동안
청년층(15~29세)의
주요 고용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현재
양적 지표상
고용여건 개선의 흐름이
관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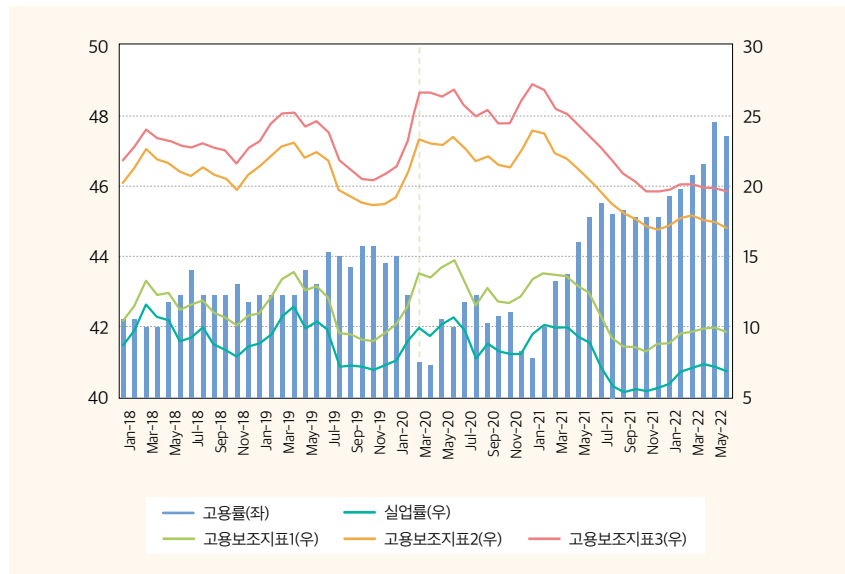
자의 경우 예년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년

최근 5년 동안 청년층(15~29세)의 주요 고용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상 지표들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가령 고용률의 경우 2020년 4월 최저치인 40.9%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22년 5월 고려 기간 내 최고 수준인 47.8%에 도달하고 있다.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에도 2022년 6월 현재 양적 지표상 고용여건 개선의 흐름이 관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림 4]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추이: 2018년 1월 ~ 2022년 6월

(단위: %)



- 주: 1. 고용률 = 취업자/총인구
- 2.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3. 고용보조지표1 = (실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
- 4. 고용보조지표2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
- 5.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확장경제활동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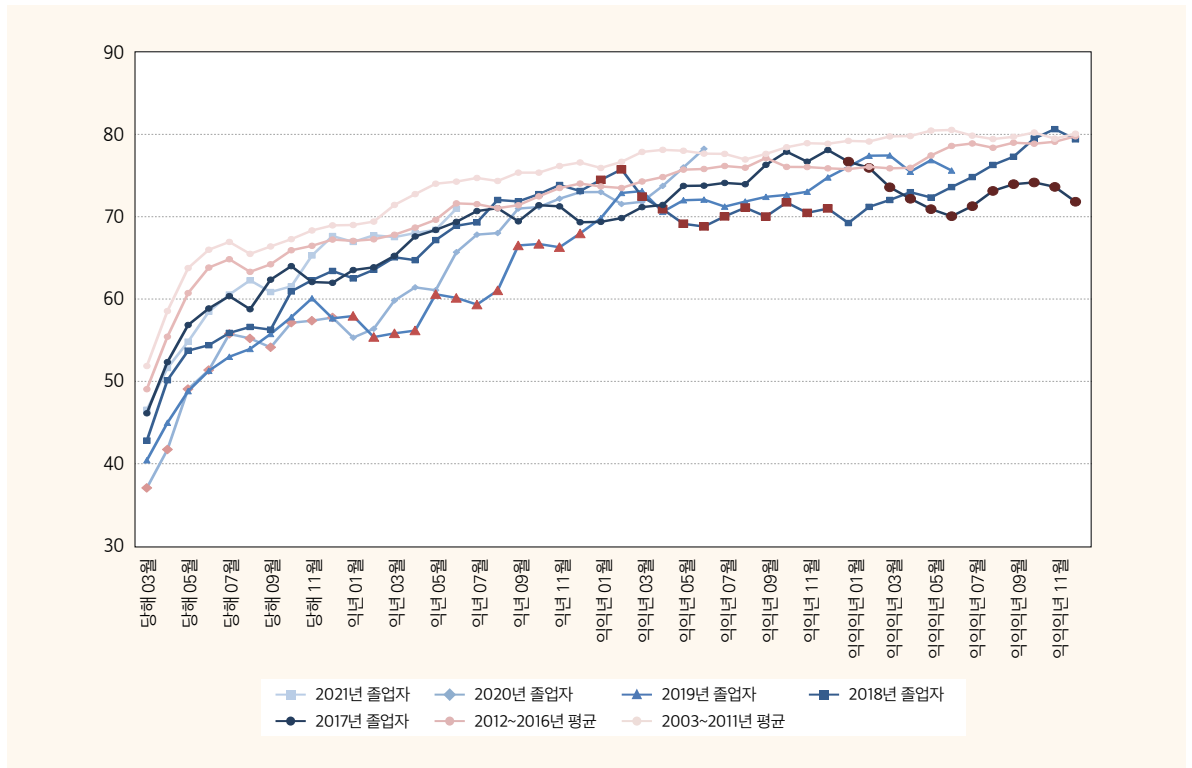
한편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한 신규 (초)대졸자의 졸업 후 46개월간의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2020년 졸업자 모두 2020년 3~12월 동안 고용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되 2021년 이후 회복된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그림 5] 참조).¹¹⁾ 특히 2020년 졸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2021년 이후 고용률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목격되는데, 고용률 지표상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오히려 2019년 졸업자에게 더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2019년 졸업자가 이미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책 비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편 노동시장 진입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2017년 졸업자의 고용률 역시 2020년

2017~2020년 신규 (초)대졸자의 경우 2020년 3~12월 동안 고용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되 이후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 교육수준별 혹은 성별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도 1] 및 [부도 2] 참조

[그림 5] 신규 (초)대졸자 고용률^{1), 2)}

(단위: %)



주: 1) 해당 연도 졸업자 중 각 연월 취업자 수를 해당 연도 졸업자 수로 나눈 값
 2) 파란선 위의 붉은색 표식은 2020년에 해당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의 질이
2022년 4월 현재
상당 수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그 주변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끝으로 2017~2020년 졸업자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2012~2016년 졸업자 평균 혹은 2003~2011년 졸업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추후 관련 지표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찰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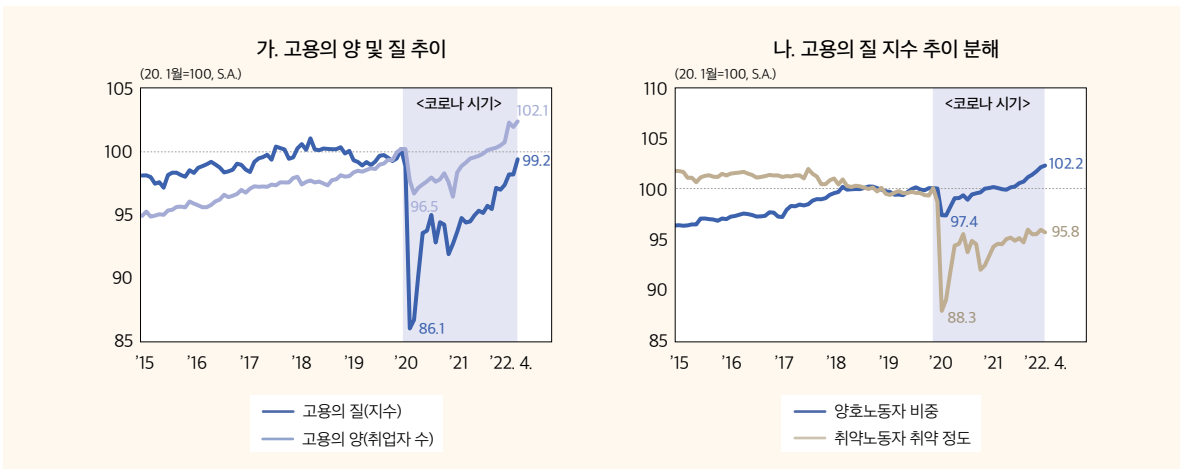
2. 질적 측면

전염병 사태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고용의 질을 측정·평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¹²⁾ 코로나19 발생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의 질이 2022년 4월 현재 상당 수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세 가지 평가항목(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실직위험)을 기준으로 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세 가지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 “취약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월 대비 13.9%까지 하락(2020년 4월 기준)하였

12) 송상윤·배기원(2022)

[그림 6] 고용의 질 지수¹⁾ 추이: 전체



주: 1) 2020년 1월 지수가 100으로 표준화됨

출처: 송상윤·배기원(2022), <그림 7> 및 <그림 8>(분석 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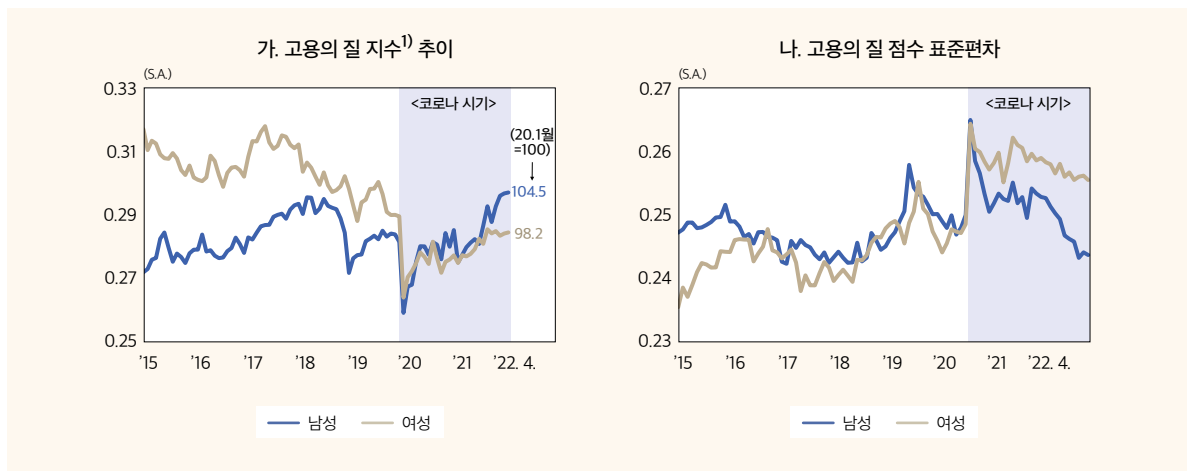
던 고용의 질은 2022년 4월 현재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정도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6) 참조). 이는 2022년 4월 현재 고용의 양이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적 측면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송상윤·배기원, 2022). 한편 고용의 질 회복 속도가 고용의 양 회복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동일 연구의 청년(15~29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성별 이질성 및 개인 간 격차 확대 양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 가령 남성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직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뒤 2022년 4월 현재 예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까지 고용의 질 지수가 호전된 반면, 여성 청년층의 경우 그 회복이 남성 청년층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7 가. 참조).¹³⁾ 나아가 고용의 질 점수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개인 간 격차를 평가할 경우 전염병 사태 발생 이후 여성 청년층 내 고용의 질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그림 7 나. 참조), 이는 남성 청년층의 경우 해당 지표가 2022년 4월 현재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청년(15~29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여성의 고용의 질 회복이 남성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별 이질성 및 개인 간 격차 확대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

13) 송상윤·배기원(2022)은 여성 청년층의 고용의 질 부진 원인으로 고용 불안정성과(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을 지목하고 있는 바,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7] 고용의 질 지수 추이: 청년(15~29세)



주: 1) 2020년 1월 지수가 100으로 표준화됨
출처: 송상윤·배기원(2022), <그림 18> 및 <그림 21>(분석 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진단하기 위해서는
표면적·가시적 지표
이면의 심층적 양상에 대한
엄밀한 관찰·분석이
요구된다.

Ⅲ.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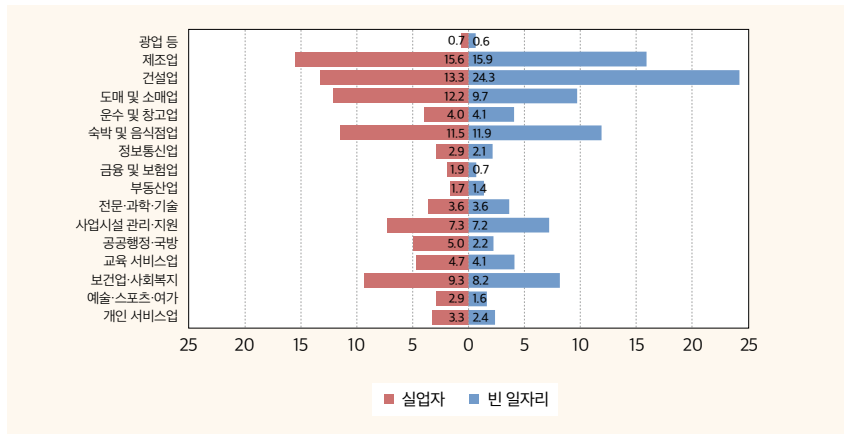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추적·검토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 분석의 필요성, 분석 방법 및 자료,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 결과 등을 차례로 논의하기로 한다.

1. 분석 배경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직후 양적·질적 지표의 동반 악화를 경험하였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022년 6월 현재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상당 수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진단하기 위해서는 표면적·가시적 지표 이면의 심층적 양상에 대한 엄밀한 관찰·분석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8] 실업자 및 빈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 비교: 2018년 1월 ~ 2022년 6월

(단위: %)



주: 1. 해당 기간 동안 산업별 비중의 평균임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과 함께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산업 미스매치 지수(마찰적 요인에 의한 최적 수준 대비 신규 고용 감소율)는 김지운(2017)에 의해 2015년 이후 급격히 상승 중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 분석 기간의 종결점인 2017년 이후에도 경제 내 마찰적 요인들에 의하여 구직자들의 산업 간 이동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업자 및 빈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 평균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이후에도 산업 간 구인·구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더욱이 코로나19 충격이 각 산업에 이질적으로 가해짐에 따라(부도 3)¹⁴⁾ 2020년 이후 산업 간 구인·구직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었을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⁵⁾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전후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엄밀히 측정·평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접근 방향을 신중히 모색하는 작업은 시의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 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소개하되, 동 방법론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용한 황수빈·박상순(2021), 김지운(2017) 등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참조하도록 한다. 이어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 시 필요한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 방법과 추정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을 활용하여 최적 구인배율을 도출하는 방법 역시 차례로 소개하도록 한다.

가. 산업 미스매치 지수

경제 내 1부터 I 까지 총 I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 상태에서, t 기 산업 미스매치 지수 $M_{\phi,t}$ 의 산출방법은 식 (1)에 제시된 바와 같다.¹⁶⁾

$$M_{\phi,t} = 1 - \frac{h_t}{h_t^*} = 1 - \sum_{i=1}^I \left(\frac{\phi_i}{\phi_t} \right) \left(\frac{v_{i,t}}{v_t} \right)^\alpha \left(\frac{u_{i,t}}{u_t} \right)^{1-\alpha} \quad \text{식 (1)}$$

**코로나19 충격이
각 산업에 이질적으로
가해짐에 따라 산업 간
구인·구직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었을 여지가
상당한 바,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엄밀히 측정·평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접근 방향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14) 2015~2017년 동안의 산업별 GDP 성장을 표준편차 및 산업별 (u, v) 상관계수 추이는 황수빈·박상순(2021)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15)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심화 양상을 보고하였던 황수빈·박상순(2021)은 코로나19 경기 충격의 산업별 차별성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16) 미스매치 지수 도출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Sahin *et al.*(2014), 김지운(2017)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정의된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신규 고용 감소율로
해석될 수 있다.

식 (1)에서 $u_{i,t}$ 는 t 기 i 산업의 실업자 수, u_t 는 t 기 전체 실업자 수¹⁷⁾를 의미하며, $u_{i,t}$ 는 t 기 i 산업의 빈 일자리 수, v_t 는 t 기 전체 빈 일자리 수¹⁸⁾를 각각 의미한다. $h_{i,t}^*$ 는 t 기 i 산업의 최적 신규 고용 수준, h_t^* 는 t 기 경제 내 최적 신규 고용 수준¹⁹⁾을 의미하는데, $h_{i,t}^*$ 는 사회적 계획자(social planner)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h_{i,t}$ 는 t 기 i 산업의 실제 신규 고용 수준, h_t 는 t 기 경제 내 실제 신규 고용 수준²⁰⁾을 의미하는데, $h_{i,t}$ 의 값은 다음의 매칭함수(matching function) (2)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h_{i,t} = \Phi_t \phi_i v_{i,t}^\alpha u_{i,t}^{1-\alpha} \tag{2}$$

식 (2)에서 Φ_t 는 t 기 전체 경제의 매치 효율성(match efficiency)을 의미한다. ϕ_i 는 i 산업의 매치 효율성에 해당되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²¹⁾ $\alpha \in (0, 1)$ 은 매치 탄력성 모수이다.

끝으로 식 (1)에서 $\bar{\phi}_t$ 는 경제 내 전체 빈 일자리 수 대비 각 산업 내 빈 일자리 수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개별 산업 매치 효율성들의 가중 평균을 의미하는데, 엄밀한 정의는 식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bar{\phi}_t = \left[\sum_{i=1}^I \phi_i^{1/\alpha} \left(\frac{v_{i,t}}{v_t} \right) \right]^\alpha \tag{3}$$

이상에서 정의된 산업 미스매치 지수 $M_{\phi,t}$ 는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신규 고용 감소율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 내 마찰이 없을 경우(즉, $h_t = h_t^*$ 인 경우) 산업 미스매치 지수 $M_{\phi,t}$ 의 값은 0으로 계산되며, $M_{\phi,t}$ 의 값이 클수록 경제 내 마찰로 인한 고용 손실의 정도가 더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나. 산업별 매치 효율성

식 (1)을 활용하여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수 $u_{i,t}$ 의 값 및 빈 일자리 수 $v_{i,t}$ 의 값, 산업별 매치 효율성 ϕ_i 의 값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17) 즉, $u_t = \sum_{i=1}^I u_{i,t}$

18) 즉, $v_t = \sum_{i=1}^I v_{i,t}$

19) 즉, $h_t^* = \sum_{i=1}^I h_{i,t}^*$

20) 즉, $h_t = \sum_{i=1}^I h_{i,t}$

21) 물론 구조적 변화 등에 의하여 산업별 매치 효율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한데, 이하에서 ϕ_i 추정 시 이를 감안할 예정임을 미리 밝혀둔다.

$\bar{\phi}_i$ 의 값이 필요하다. 이때 $u_{i,t}, v_{i,t}$ 등의 값은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으나, ϕ_i 의 경우 추정이 필요하다. 산업별 매치 효율성 ϕ_i 의 추정을 위하여 산업별 매칭함수 (2)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의 식 (4)를 이용하도록 한다.

$$\log\left(\frac{h_{i,t}}{u_{i,t}}\right) = \log\Phi_t + \log\phi_i + \alpha \log\left(\frac{v_{i,t}}{u_{i,t}}\right) \quad \text{식 (4)}$$

식 (4)를 이용하여 $\log\phi_i$ 의 값 추정 시 전체 경제의 매치 효율성(의 로그값) $\log\Phi_t$ 의 경우 4차 시간 추세²²⁾로 근사(Sahin et al., 2014)하도록 하며, 매치 탄력성 α 의 값으로는 0.5(황수빈·박상순, 2021) 혹은 0.75(김지운, 2017)²³⁾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제 추정에서는 위 식 (4)의 모형(모형 1)과 더불어 2020년 3월 전후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변화를 가정하는 모형(모형 2)²⁴⁾ 및 2020년 3월 전후 및 2021년 7월 전후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변화를 가정하는 모형(모형 3)²⁵⁾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다. 최적 구인배율

산업별 실제 구인배율 및 최적 구인배율은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우선 산업별 실제 구인배율의 경우 $\phi_i(v_i/u_i)^\alpha$ 로 정의되므로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치가 주어지면 바로 계산될 수 있다. 반면 산업별 최적 구인배율의 경우 $\phi_i(v_i/u_i^*)^\alpha$ 로 정의되는데, 그 값은 사회적 계획자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최적 조건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계획자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최적 조건은 식 (5)와 같다.

$$\phi_i \left(\frac{v_i}{u_i}\right)^\alpha = \phi_j \left(\frac{v_j}{u_j}\right)^\alpha \quad \forall i \in \{1, \dots, I\}, j \in \{1, \dots, I\}, i \neq j \quad \text{식 (5)}$$

위 최적 조건에 따르면, 산업별 최적 구인배율은 전 산업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그 최적 수준을 c 로 표기하기로 한다. 간단한 과정을 통해 식 (5)로부터 $u_i^* = (\phi_i/c)^{1/\alpha} v_i$ 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22) 즉, $\sum_{k=1}^4 \beta_k t^k$

23) 보다 정확하게는 0.744가 김지운(2017)의 매치 탄력성 추정치이다.

24) 2020년 3월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5) 2021년 7월 기준의 경우 실업률 지표의 변동 양상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별 실업자 수는
통계청이 매월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확보·구축하였다.

$$u = \sum_{i=1}^I u_i^* = c^{-1/\alpha} \sum_{i=1}^I \phi_i^{1/\alpha} v_i \quad \text{식 (6)}$$

이제 식 (6)을 이용하면 산업별 최적 구인배율 c 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left[\frac{\sum_{i=1}^I \phi_i^{1/\alpha} v_i}{u} \right]^\alpha \quad \text{식 (7)}$$

독자들은 분석 자료 및 이를 활용한 추정치 등을 사용하여 식 (7) 우변의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3. 분석 자료

본고의 분석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54개월이다. 2020년 3월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간주할 때 코로나19 발생 전 26개월 및 발생 이후 28개월이 분석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본고가 분석 기간 측면에서 기존 국내 선행연구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본고의 주된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모두 매 익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분석 주기는 월별로 설정하였는데, 필요에 따라 계절성 제거를 위해 계절 조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출을 위한 자료 가공 절차를 간략히 소개·논의하기로 한다.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별 실업자 수는 통계청이 매 월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확보·구축하였다.²⁶⁾ 이하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실업자 수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산업 정보를 활용하였는데,²⁷⁾ 실직 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등 이전 직장

26) 실업자 산업별 분포의 연도별 추이는 <부표 1> 참고

27) 즉, Sahin et al.(2014), 김지운(2017) 등과 마찬가지로 실업자들은 이전 직장이 속해있는 산업에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는 셈인데, 관련 자료의 부재로 해당 가정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혀둔다.

산업 정보가 없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에 따라 각 산업에 안분하였다(김지운, 2017).

한편 선행연구(김지운, 2017)를 따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비조사대상 산업인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에도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에 따라 각 산업에 안분하였으며, 관측치 수가 0인 경우가 있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 등을 묶어 “광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나. 「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별 빈 일자리 수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확보·구축하였다.^{28), 29)} 역시 김지운(2017)을 따라 산업별 빈 일자리 수는 월말 빈 일자리 수와 월중 채용 건수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을 “광업 등”으로 통합하여 재분류하였다. 한편 분석 기간이 2018년 1월 이후이므로 산업 분류 조정에 따른 시계열 상의 불연속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4.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된 결과를 제시·논의한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이후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 결과와 이를 활용한 최적 구인배율 산출 결과를 차례로 논의하도록 한다. 참고로 이하에서는 매치 탄력성의 값을 0.75로 설정하는 동시에 모형 3³⁰⁾으로부터 추정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값을 사용하여 도출한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매치 탄력성 및 산업별 매치 효율성 값에 변화를 가한 추정 결과 역시 보완적으로 제시·검토함으로써 기본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가. 산업 미스매치 지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구축된 자료를 식 (1)에 적

산업 미스매치 지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별 빈 일자리 수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확보·구축하였다.

28) 빈 일자리 산업별 분포의 연도별 추이는 <부표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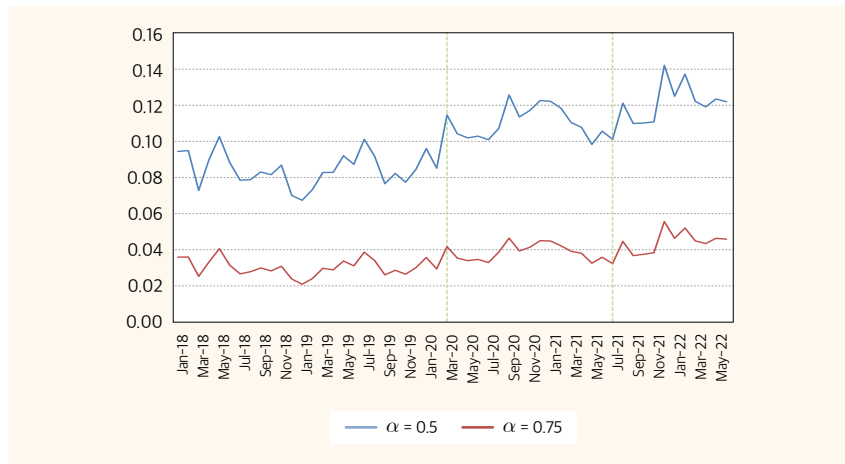
29)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비조사대상 산업이다.

30) 2020년 3월 전후 및 2021년 7월 전후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변화를 가정하는 모형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한 결과,
분석 기간 동안의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로 인하여
최적 수준 대비 3.6%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하여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된 결과,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신규 고용 감소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 및 <표 1> 참조). 분석 기간(2018년 1월 ~ 2022년 6월) 동안 산업 미스매치 지수 월별 추정치들의 평균은 0.036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최적 수준 대비 3.6% 낮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2009~2017년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 2.2%(김지운, 2017)보다 1.4%p 높은 값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 미스매치의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9] 산업 미스매치 지수^{1), 2)의 추이³⁾: 2018년 1월 ~ 2022년 6월}



주: 1)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식 (1)에 의해 산출됨
2) 모형 3에 의하여 추정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임
3) 푸른색(붉은색) 추이는 매치 탄력성(α) 값이 0.5(0.75)로 설정된 상태에서의 계산 결과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1> 산업 미스매치 지수^{1) 추정 결과²⁾: 2018년 1월 ~ 2022년 6월}

(단위: %)

매치 탄력성(α)	'18.1. ~ '20.2. ³⁾	'20.3. ~ '21.6. ³⁾	'21.7. ~ '22.6. ³⁾	'18.1. ~ '22.6. ³⁾
0.50	8.5	11.1	12.0	10.0
0.75	3.0	3.9	4.3	3.6

주: 1) 식 (1)에 의해 산출된 산업 미스매치 지수에 100을 곱한 수치임
2) 모형 3에 의하여 추정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임
3) 해당 기간 월별 추정치들의 평균값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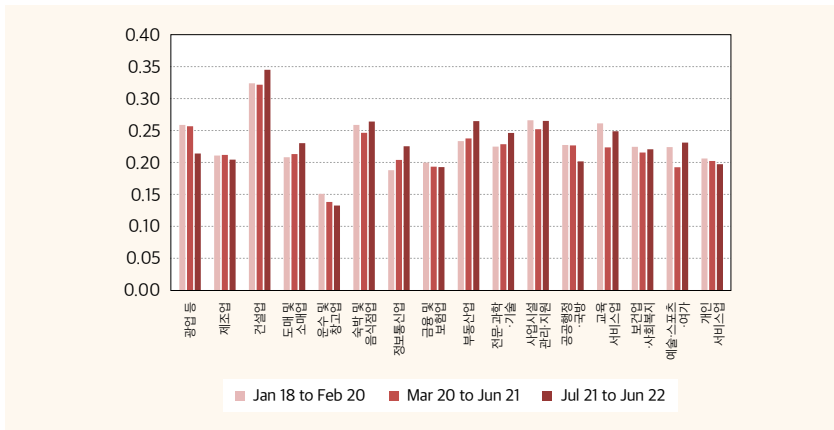
산업별 매치 효율성을 추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산업 미스매치 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전염병 사태 발생 이후 그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월별 지수 평균이 3.0%로 추정된 반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지수 평균은 3.9%,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월별 지수 평균은 4.3%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산업 미스매치 지수 추정치는 매치 탄력성의 값에 따라 그 수준이 민감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관찰되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지수 증가 추이는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매치 탄력성의 값을 0.5로 설정한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월별 지수 평균은 12.0%로 추정되어 산업 미스매치 정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8.5%) 혹은 발생 직후(11.1%)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³¹⁾

나. 산업별 매치 효율성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 결과는 [그림 10]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³²⁾ 특정 산업 내 매치 효율성이 높을 경우 다른 조건들(실업자 수, 빈 일자리 수)이 모두

[그림 10] 산업별 매치 효율성 기간별 추정 결과: 2018년 1월 ~ 2022년 6월



주: 1. 매치 탄력성(α)의 값이 0.75로 설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추정치임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과 함께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그 이전과 비교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31) 참고로 황수빈·박상순(2021)은 동일한 매치 탄력성 값(0.5)을 사용하여 2020년 4분기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11.1%로 추정한 바 있다.
 32) [그림 11]은 매치 탄력성의 값을 0.75로 설정한 상태에서의 모형 3 추정 결과를 도해한 것으로,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모형별 추정 결과는 <부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특정 산업 내
매치 효율성이 높을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더라도 실업에서
신규 고용으로의 전환율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추정 결과 매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
가장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더라도 실업에서 신규 고용으로의 전환율이 높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추정 결과 매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산업은 건설업, 매치 효율성이 가장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인 것으로 나타났다.³³⁾ 건설업의 높은 매치 효율성은 산업 내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의 인력 수급이 주로 민간 고용지원 업체를 매개로, 비교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관과 부합되는데(김지운, 2017), 채용 관련 비용(2020 회계연도 기준 1.9천원)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부도 4] 참조). 그에 반해 운수(및 창고)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구직자, 장비(차량), 빈 일자리의 결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 내 매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김지운, 2017).

한편 산업별 매치 효율성의 기간별 추정치로부터 공통적인 양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코로나19가 각 산업에 미친 이질적인 영향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은 매치 효율성의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이들 산업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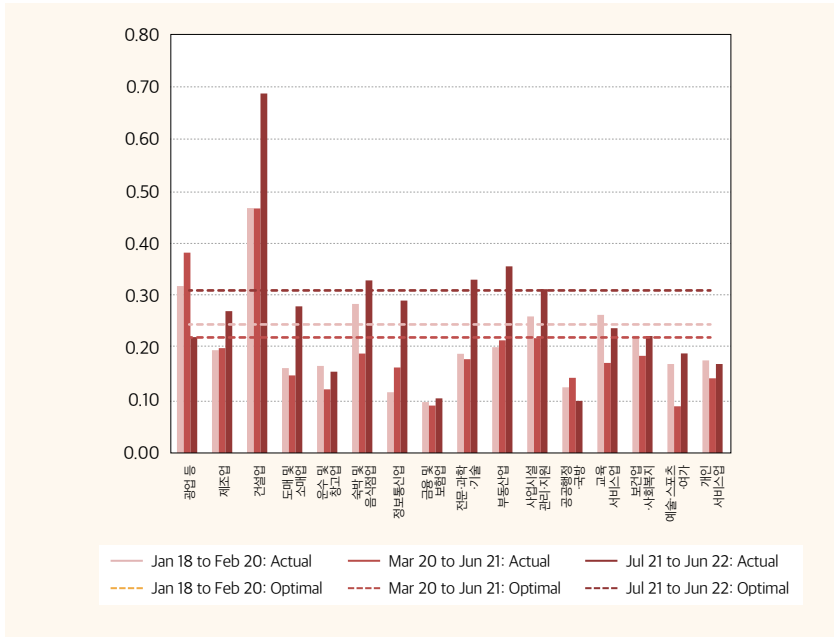
다. 최적 구인배율

산업별 실제 및 최적 구인배율의 추정 결과는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적 구인배율 수준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0.25, 발생 직후 0.22, 2021년 7월 이후 0.31로 각각 추정되었다. 한편 앞서 논의한 산업별 매치 효율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업별 실제 구인배율을 추정한 결과, 건설업의 경우 실제 구인배율이 최적 구인배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 내에서 주어진 일자리 수 대비 실제 구직자들의 수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예술·스포츠·여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실제 구인배율이 최적 구인배율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에서 주어진 일자리 수 대비 실제 구직자들의 수가 사회적 최적 수준을 웃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별 실제 구인배율과 최적 구인배율 간 괴리가 발생·관찰되는 것은 임금

33) 이는 김지운(2017)의 추정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11] 산업별 실제 및 최적 구인배율 추정 결과: 2018년 1월 ~ 2022년 6월



주: 1. 매치 탄력성(α)의 값이 0.75로 설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추정치임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과 함께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산업별 실제 구인배율과 최적 구인배율 간 괴리가 발생·관찰되는 것은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에 의하여 구직자들의 산업 간 이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 수준의 불일치 등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에 의하여 구직자들의 산업 간 이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지운, 2017). 만일 경제 내 마찰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된다면, 구직자들의 원활한 산업 간 이동을 통하여 모든 산업의 실제 구인배율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로 인하여 구직자들의 산업 간 이동은 저해되며, 그에 따라 경제 전체의 실제 실업률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때 만일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의 자연스러운 해소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실제 및 최적 구인배율 간 괴리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정도가 상당할 경우,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산업 미스매치 발생 및 증가의 원인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 정보 부족, 기술 수준의 불일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하여 그 변화 양상을 엄밀히 추적·검토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거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회복은 양적 측면 대비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시적인 양적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기존 선행연구(김지운, 2017)에서 2015년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의 상승세가 이미 목격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³⁴⁾

분석 방법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산업 미스매치 발생 및 증가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잠재적인 원인으로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 정보 부족, 기술 수준의 불일치, 지역적 선호, 명시적·암묵적 이동비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기업체의 빈 일자리 미충원 사유에 대한 조사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그림 12) 참조).³⁵⁾ 경력, 학력·자격 불일치 및 구직자의 직종 관련 선호 역시 조사기간 동안 10% 이상의 응답률을 유지³⁶⁾하고 있는데, 해당 요인들이 구직자의 산업 간 이동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2018년까지 미충원 사유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기타 응답률의 경우 2020년 상반기 13.5%를 기록한 뒤 2022년 상반기 현재까지 7%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타에 포함된 요인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의 증가 추세를 견인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후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고민·설계하는 과정에서 기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는 발생 및 증가 원인에 대한 엄밀한 규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³⁷⁾ 이후 밝혀진 원인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향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들로부터의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

34) 단,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심화가 (코로나19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존 추세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본고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추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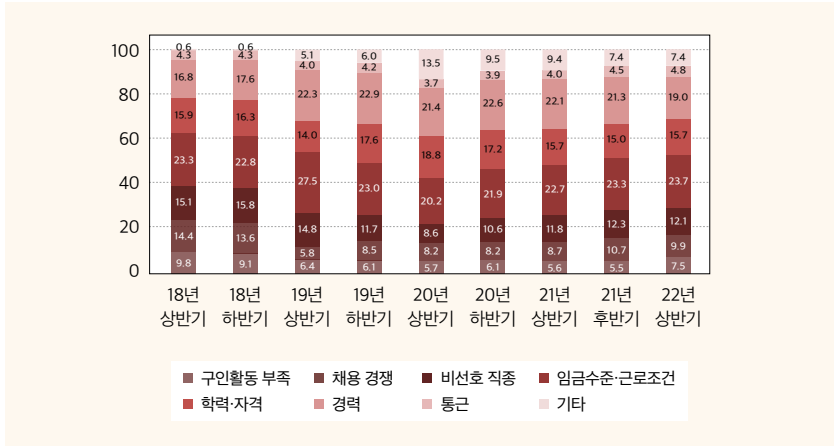
35) 2011~2017년 동안의 빈 일자리 미충원 사유 변화 추이는 김지운(20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36) 구직자의 직종 관련 선호의 경우 2020년 상반기(8.6%)에 예외적으로 그 응답률이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37) 산업 미스매치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Herz and van Rens(2020)의 방법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2] 빈 일자리 미충원 사유: 2018년 상반기 ~ 2022년 상반기

(단위: %)



주: 각 사유별 비중의 값은 반올림 되었으므로 그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는 발생 및 증가 원인에 대한 엄밀한 규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밝혀진 원인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향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운, 2017).³⁸⁾ 한편 정보 부족이 구직자의 산업 간 이동의 저해 요인이라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황수빈·박상순, 2021). 반면 기술 수준의 불일치가 주된 문제일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데, 인력 부족 산업으로의 구직자 유입 유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인력 양성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한요셉, 2020). Kipf

<참고문헌>

김지운,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연구: 산업별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7.

박세정·강민정, 『행정DB를 이용한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취업성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21.

송상윤·김하은, 「코로나19의 상흔: 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 『BOK 이슈노트』, 2021-18, 2021, pp. 1~14.

38) 구체적으로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운영, 사회안전망 확대·강화를 동반하는 노동시장 내 유연성 제고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김지운, 2017).

송상윤·배기원,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BOK 이슈노트』, 2022-22, 2022, pp. 1~19

오삼일·이상아, 「고용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BOK 이슈노트』, 2021-2, 2021, pp. 1~10.

오삼일·이종하,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BOK 이슈노트』, 2021-24, 2021, pp. 1~9.

유진성,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KERI Insight』, 21-08, 2021, pp. 1~26.

이기쁨, 「구직구인비율과 경기변동 간 관계 분석」,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2월호, 2021, pp. 79~92.

한요섭,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경제전망』, 37(1), 2020, pp. 39~46.

함선유, 「코로나19의 확산과 이행기 청년의 고용변화」, 『산업노동연구』, 28(1), 2022, pp. 69~101.

황수빈·박상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조사통계월보』, 2021년 2월호, 2021, pp. 16~34.

Herz, B., and T. van Rens, “Accounting for Mismatch Unemploy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8(4), 2020, pp. 1619~1654.

Sahin, A., J. Song, G. Topa, and G. L. Violante, “Mismatch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1), 2014, pp. 3529~3564.

고용노동부,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21.

_____,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_____,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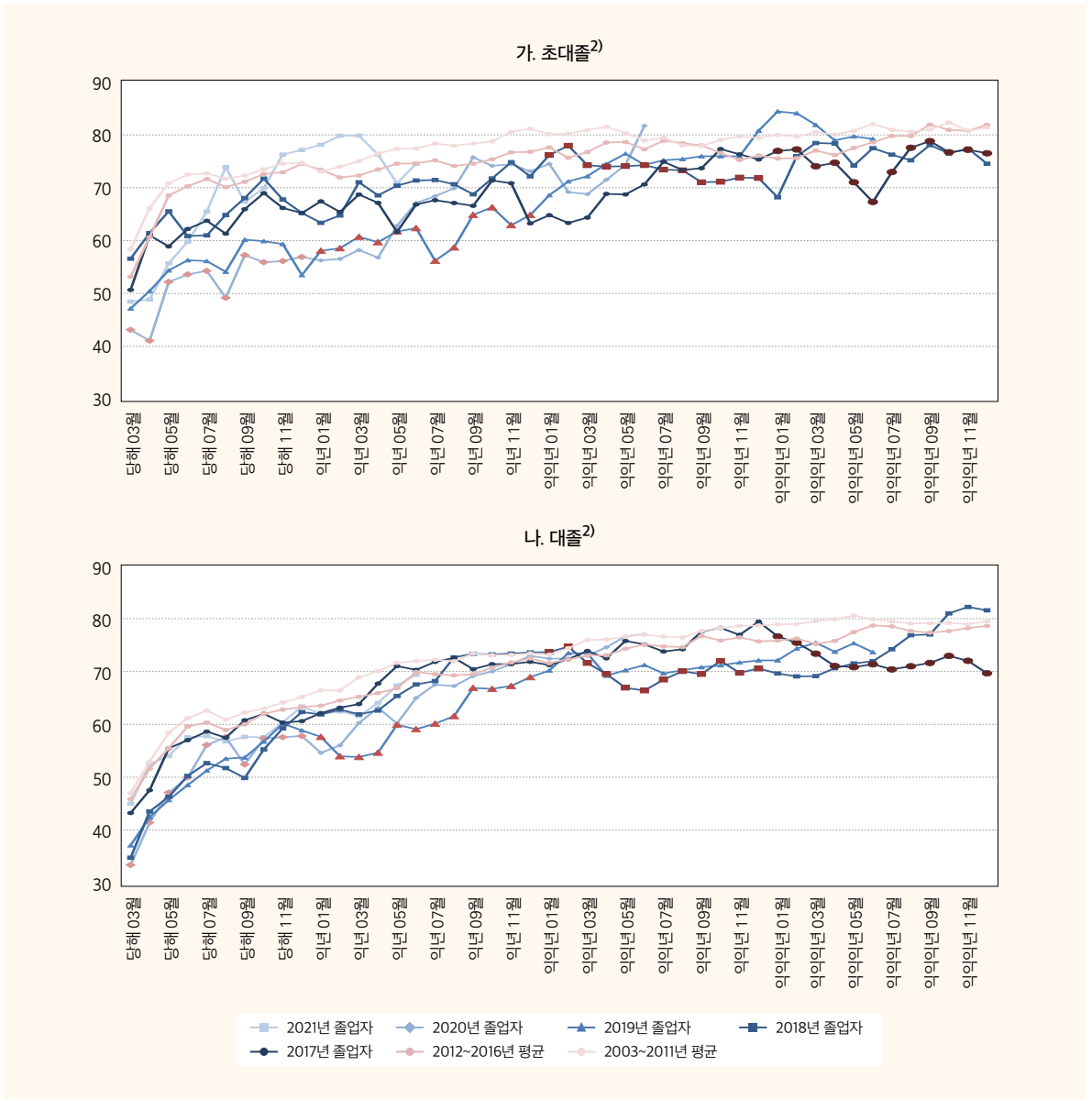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분기

_____, 「국민소득」, 각 분기

<부록>

[부도 1] 신규(초)대졸자 고용률¹⁾: 초대졸, 대졸

(단위: %)



주: 1) 해당 연도 졸업자 중 각 연월 취업자 수를 해당 연도 졸업자 수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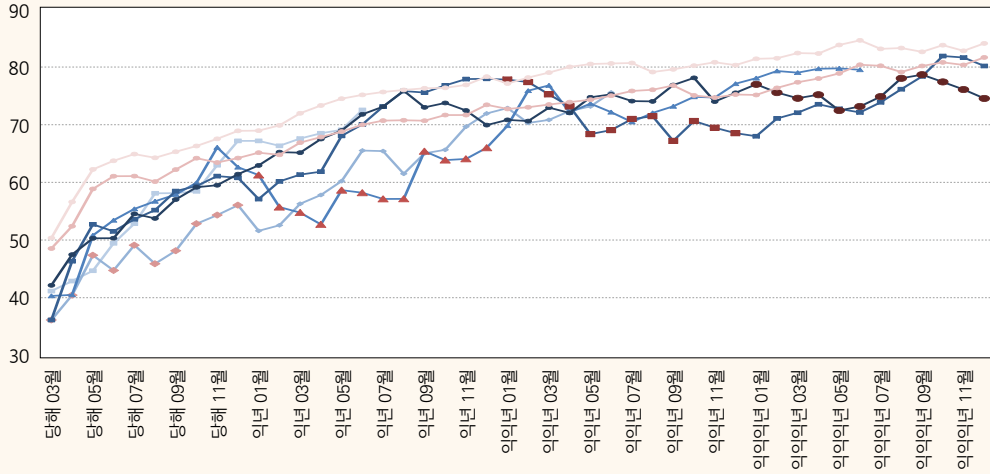
2) 파란선 위의 붉은색 표식은 2020년에 해당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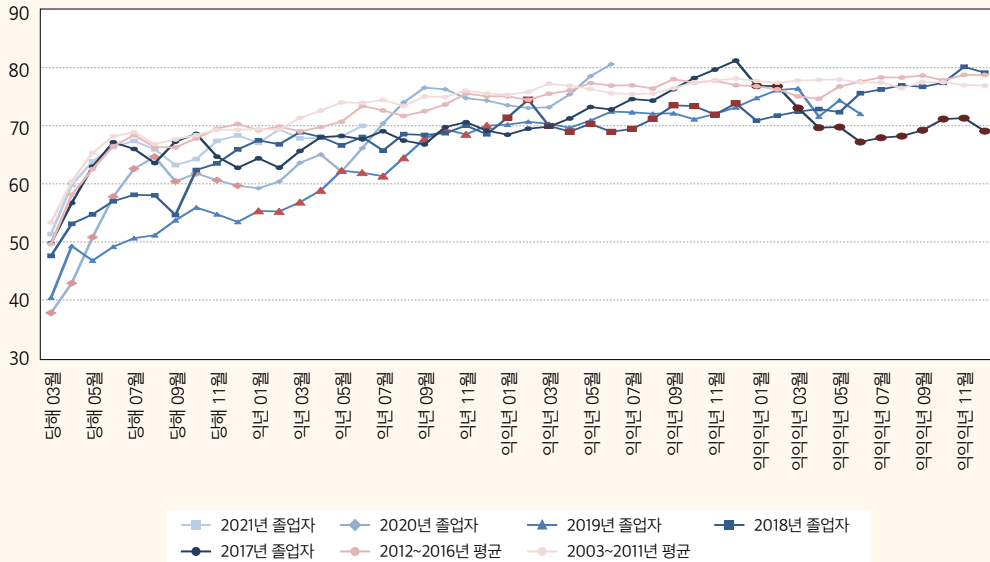
[부도 2] 신규 (초)대졸자 고용률¹⁾: 남성, 여성

(단위: %)

가. 남성²⁾



나. 여성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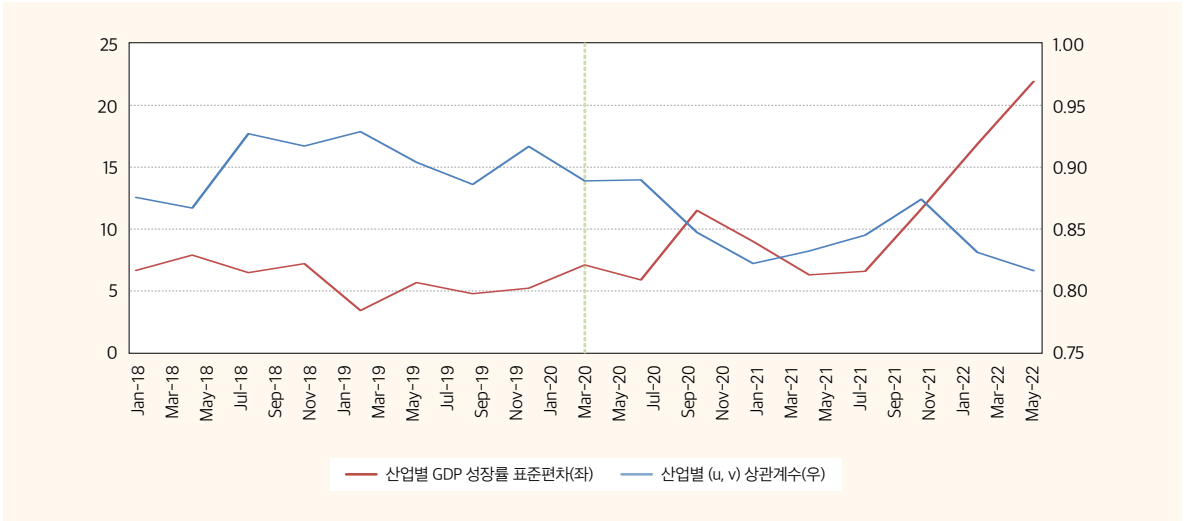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 졸업자 중 각 연월 취업자 수를 해당 연도 졸업자 수로 나눈 값

2) 파란선 위의 붉은색 표식은 2020년에 해당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부도 3] 산업별 GDP¹⁾ 성장률²⁾ 표준편차 및 산업별 (u, v)¹⁾ 상관계수 추이: 18Q1 ~ 22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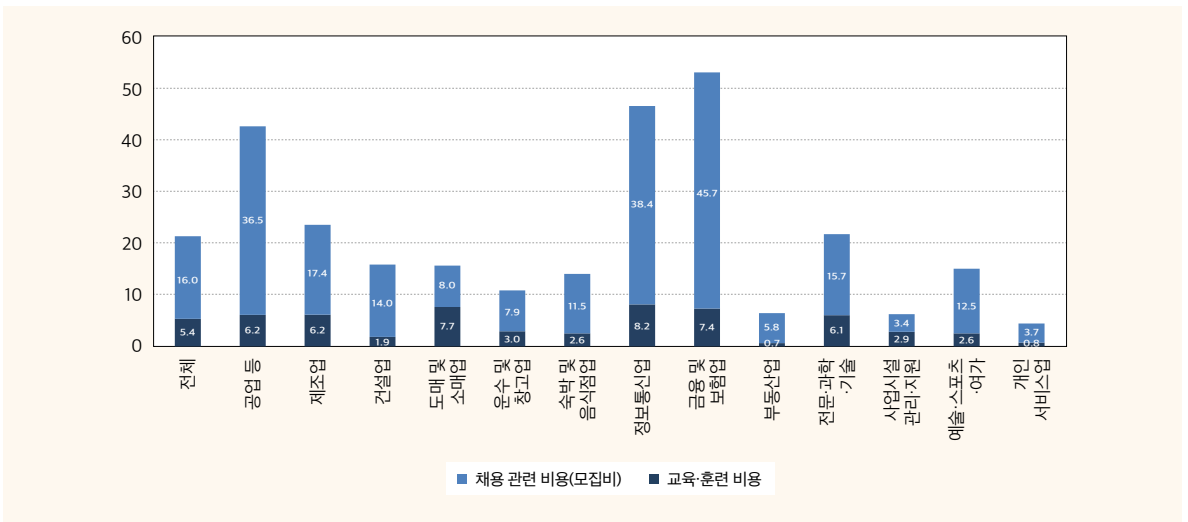
주: 1) 계절 조정됨

2) 계정항목(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별 명목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출처: 「국민계정」,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4] 산업별^{1), 2)} 채용 관련 비용 및 교육·훈련 비용: 2020 회계연도 기준

(단위: 천원)



주: 1) "광업 등"은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 비용의 평균치임

2) 농업·임업·어업(A), 공공행정·국방(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사회복지(Q),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등은 비조사대상 산업으로 해당 자료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21

<부표 1> 실업자의 산업별 분포: 2018~2022년

(단위: %)

산업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광업 등	0.7	0.5	0.4	0.7	1.1	0.7
제조업	18.0	16.0	14.7	13.4	15.8	15.6
건설업	12.9	14.7	14.5	13.1	11.5	13.3
도매 및 소매업	13.4	13.3	12.7	12.6	9.0	12.2
운수 및 창고업	3.2	3.7	4.8	3.8	4.5	4.0
숙박 및 음식점업	11.4	11.8	12.4	11.4	10.6	11.5
정보통신업	3.4	3.5	2.9	2.6	2.1	2.9
금융 및 보험업	2.0	1.9	1.8	1.4	2.6	1.9
부동산업	1.8	1.6	2.2	1.6	1.2	1.7
전문·과학·기술	4.4	3.7	3.1	3.8	3.3	3.6
사업시설 관리·지원	7.8	7.2	7.0	7.9	6.6	7.3
공공행정·국방	3.5	3.4	4.5	7.3	6.3	5.0
교육 서비스업	4.4	4.4	4.6	4.2	5.9	4.7
보건업·사회복지	7.2	8.3	8.4	9.5	13.4	9.3
예술·스포츠·여가	2.4	2.8	3.4	3.1	2.8	2.9
개인 서비스업	3.6	3.2	2.8	3.5	3.4	3.3

주: 1. 2022년은 상반기 평균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과 함께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부표 2> 빈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2018~2022년

(단위: %)

산업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광업 등	0.6	0.7	0.6	0.6	0.6	0.6
제조업	16.5	15.6	14.4	16.3	16.9	15.9
건설업	22.1	23.9	26.9	25.3	23.2	24.3
도매 및 소매업	10.6	9.2	9.4	9.6	9.8	9.7
운수 및 창고업	3.9	4.2	4.4	4.2	3.6	4.1
숙박 및 음식점업	13.7	13.3	10.2	10.6	11.8	11.9
정보통신업	1.9	1.8	2.0	2.4	2.6	2.1
금융 및 보험업	0.7	0.8	0.6	0.6	0.6	0.7
부동산업	1.3	1.3	1.4	1.4	1.4	1.4
전문·과학·기술	3.5	3.5	3.6	3.7	3.8	3.6
사업시설 관리·지원	7.3	7.5	7.2	7.0	7.0	7.2
공공행정·국방	1.4	1.5	3.5	2.5	2.1	2.2
교육 서비스업	4.7	4.6	3.8	3.6	3.9	4.1
보건업·사회복지	7.3	7.8	8.4	8.6	8.8	8.2
예술·스포츠·여가	1.9	1.7	1.4	1.5	1.7	1.6
개인 서비스업	2.6	2.6	2.2	2.1	2.2	2.4

주: 1. 2022년은 상반기 평균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부표 3> 산업별 매치 효율성 모형별 추정 결과: 2018년 1월 ~ 2022년 6월

산업	모형 1	모형 2		모형 3		
	'18. 1. ~ '22. 6.	'18. 1. ~ '20. 2.	'20. 3. ~ '22. 6.	'18. 1. ~ '20. 2.	'20. 3. ~ '21. 6.	'21. 7. ~ '22. 6.
광업 등	0.298	0.144	0.129	0.259	0.257	0.215
제조업	0.252	0.117	0.113	0.211	0.212	0.205
건설업	0.394	0.180	0.180	0.324	0.322	0.346
도매 및 소매업	0.258	0.116	0.120	0.209	0.214	0.231
운수 및 창고업	0.172	0.084	0.074	0.152	0.139	0.133
숙박 및 음식점업	0.308	0.144	0.138	0.259	0.247	0.265
정보통신업	0.241	0.105	0.116	0.189	0.205	0.226
금융 및 보험업	0.236	0.111	0.105	0.200	0.194	0.193
부동산업	0.290	0.130	0.135	0.234	0.238	0.265
전문·과학·기술	0.277	0.125	0.128	0.225	0.229	0.247
사업시설 관리·지원	0.315	0.148	0.140	0.267	0.253	0.266
공공행정·국방	0.266	0.126	0.117	0.228	0.227	0.202
교육 서비스업	0.297	0.145	0.127	0.262	0.224	0.249
보건업·사회복지	0.266	0.125	0.118	0.225	0.216	0.221
예술·스포츠·여가	0.260	0.125	0.113	0.225	0.193	0.232
개인 서비스업	0.244	0.115	0.109	0.207	0.203	0.198

주: 1. 매치 탄력성(α)의 값이 0.75로 설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추정치임

2. "광업 등"에는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물(E)이 포함됨

3. 농업·임업·어업(A), 가구 내 고용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경우 산업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측치들과 함께 산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관측치들의 산업별 비율대로 각 산업에 안분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정책토론포트 |



■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2022년도 PEMNA 예산분과 회의

개요

- 주 제 Fiscal Governance for Green Recovery and Transition
-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 12월 1일 (목)
- 장 소 Bangkok, Thailand
- 주 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유럽연합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WB),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PEMNA는 지난 9월 총회를 서울에서 3년 만의 대면행사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서 예산분과 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함

- 본 회의는 2일에 걸쳐 녹색 회복과 전환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세부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함
 - 녹색 회복과 전환에서의 과제와 기회
 - 재정지출의 녹색화
 - 금융의 녹색화

DAY 1

11월 30일(수)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I

- Hyungon Ki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orea)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PEMNA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회원국 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함

- 첫째는 PEMNA 회원국 재무부 차관급 회의 개설로써,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긴밀한 논의와 재정정책들의 실질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둘째는 PEMNA 네트워크의 협력 범위와 깊이를 더하는 측면에서 PEMPAL과의 상호교류 증대를 언급하고, 2023년 PEMNA 연차총회에 PEMPAL을 초청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소개하며, 탄소중립이 모든 국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 반면 각 국가가 처한 재정적·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본 회의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함



Opening Remarks II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Alma Kanani(세계은행)는 화상으로 전한 개회사에서 지난 9월 성황리에 개최된 PEMNA 10주년 서울 연차총회에 이어 하이브리드 형태(대면/비대면)로 진행되는 본 회의 또한 회원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본 회의의 주제인 녹색 회복과 전환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언급하며 모든 국가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
- 이어서 녹색전환은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정책 및 재정분야에서의 세밀한 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Introduction

• Rofyanto Kurniawan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 PEMNA 예산분과 의장 Rofyanto Kurniawan의 회의 아젠다 및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세부 주제들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시작됨

- 많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각종 자연재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

Session 1.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Green Recovery and Transition

Presentation 1

• Delphine Anne Moretti (IMF)

■ 본 발표에서는 IMF의 녹색 공공재정관리 프레임워크가 소개되었으며, 재정정책적 관점과 녹색 공공재정관리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 20년간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석탄연료의 광범위한 사용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증가가 이에 기여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재정정책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그리고 녹색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다방면에 걸쳐 수립되어야 하며, 하나의 예로 탄소세(carbon taxes)를 소개함
 - 기후변화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들이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적응에 취약한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인 재정개혁과 투자는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재난 피해로 인한 부채증가를 제한할 수 있음
- IMF의 녹색 공공재정관리 프레임워크는 기존 공공재정관리 법안에 기후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선진사례

로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소개함

Presentation 2

• Dorsati Madani (The World Bank)

- 베트남은 세계은행에서 기후 및 개발 보고서(The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한 첫 국가로써,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지 않았으나 최근 해외자본유치 및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함
 - 이에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e)과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접목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증가하는 기후위험과 개발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함
 - 베트남이 재정정책을 녹색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① 수익 정책, ② 지출, ③ 조달, ④ 공기업, ⑤ 재정적 위험성, ⑥ 금융적 지원 등 여섯 개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재정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도구로써, 가격조정, 수익재분배, 자금조달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아울러 적절한 부문별 정책 및 금융수단이 동반되어야 효율적 임

Presentation 3

• Sebastian Eckardt (The World Bank)

- 중국은 최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였고,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중국 기후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써 대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함
 - 이를 위해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을 중간목표로 수립했으며, 높은 석탄 의존도, 에너지 수요증가, GDP 내 중공업의 높은 비중(39%) 등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로 지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계획이 실현가능한 근거는 중국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에너지 분야의 빠른 탈탄소화와 기술혁신에 있으며, 향후 연간 GDP의 1~1.5% 투자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세계은행의 정책제언으로는 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시장개혁을 통한 전력 부문 전환 가속화 ② 주요 에너지 수요 산업의 탈탄소화 ③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을 언급함

Presentation 4

• Rahul Kitchlu (The World Bank)

- 베트남과 같은 고속 경제성장 모델의 이면에는 석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자원의 활용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있으며, 전 세계가 고



효율 저탄소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있음

- 발표자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소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Current Policy Scenario -CPS)와 탈탄소화를 가속화하여 80%의 감축에 도달하는 시나리오(Accelerated Decarbonization Scenario-ADS)로 구별하여 발표를 진행함
- 후자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 및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해당 분야가 공기업과 공공투자의 영역이었으나 앞으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계획, 조달, 금융지원, 양허성 금융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민관협력(PPP)을 통해 민간 부문이 참여하기 수월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Session 2. Greening Spending

Presentation 1

• Socheat Heng (Cambodia)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제4기를 통해 사회경제정책에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우선순위를 수립하였으며 그 근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의 관리,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2016년 캄보디아의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해 재

무부 주도로 출연한 환경사회기금(Environment and Social Fund)은 환경부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15개의 자연재해 대응 및 예방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가 진행됨

- 환경사회기금은 현재 연간계획만 수립되어왔으나 향후 5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적 체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Presentation 2

• Agung Lestanto Notosoediro Raden (Indonesia)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과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조세정책,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하위정부 참여를 위한 재정 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음
- 2030년까지 29%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IDR 343.6trillion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여력은 IDR 92.5trillion 정도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예산 동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예산도 이미 온실가스감축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예산 중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된 예산을 추적하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정부 일선부처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 기후예산 태깅을 선별된 7개 주와 4개 구역에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도입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출판됨

Presentation 3

• Sujin Park (Korea)

- 한국은 기존 26%였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며 경제의 녹색전환 기초를 견고히 했으며, 2020년 12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산업,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한 전환 등 세 개의 분야에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녹색전환과 회복의 대표적인 예로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수소/전기차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녹색기술을 접목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을 소개함
 - 아울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등에 공여하며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Presentation 4

• Romeo Matthew Balanquit (The Philippines)

- 필리핀은 5개년(2023~2028년) 사회·경제 분야 집중안건으로 여덟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성장경제로 복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빈곤 감소를 해결할 것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목표로서 6.5~8%의 연간 GDP

성장, 빈곤율 9%(현재 18%), GDP 대비 정부부채 60%,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4,256달러 등을 소개함

- 아울러 지속가능한 녹색인프라 개발을 위한 ‘The Build, Better, More Program’을 소개하며, 프로젝트들의 재원은 정부의 국고수익, 양허성 차관, 민관협력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해서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것임

DAY 2

12월 1일(목)

Session 2. Greening Spending (cont'd)

Presentation 5

• Jorge Martinez-Vazquez (The World Bank)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긴밀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국가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함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접근방식은 대개 에너지나 교통과 같은 부문별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경우 실행 규제, 자금조달 담당이 어느 단위의 정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책임소재와 기능을 지방정부에도 배분하고 할



당하는 한편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수입, 이전, 차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Presentation 6

• Verena Fritz, Wei-Jen Leow (The World Bank)

- 소규모 경제의 중상소득 국가인 세르비아는 에너지 부문과 철강산업으로 인해 GDP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2014년 EU에 가입하며 EU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옴
 - 2006년 이후 세르비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세르비아 정부는 2021년 첫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2022년에는 정부 5대 중점과제로 기후와 환경을 선정하였으며, 프랑스의 기후예산 태깅사례를 참고하고 정부 역량강화와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친환경과 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Session 4. Greening Financing

Presentation 1

• Helena Cristina Dill (The World Bank)

- 세계적으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채권

등 특정한 테마의 채권발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테마 채권의 발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세계은행의 설문결과에 발행당국과 투자자들의 투자 동기가 비슷하고 채권 특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 국내 발행 이전 국제시장에서 우선 발행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됨
- 친환경 테마 채권의 발행은 투자자 기반을 다양화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재원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비용 및 발행과정의 복잡성 등의 단점도 공존함

Presentation 2

• Insyafiah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세계 최초의 그린 수쿠크(이슬람 채권) 발행 이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인 발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그린 수쿠크 발행국가로 선정되는 등 국제 그린 수쿠크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그린 수쿠크는 샤리아 율법 준수 채권 중 수익금의 100%를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예산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채권을 말함
 -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회복탄력성, 지속가능한 교통,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친환경 관광, 친환경 건설, 지속가

농업의 프레임워크를 충족하는 부문을 그린 수쿠크 적격부문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선정과 평가는 일선부처와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 등의 협업으로 진행됨

Presentation 3

• Jong Hyug Lee (Korea)

- 한국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재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적인 재정 및 금융시스템 확립을 정책목표로 삼고 온실가스 감축예산, 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금융 및 민간 부문의 그린펀드 활성화, 지속가능한 재정 및 재정비전 2050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음
-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위해 13개 부처 288개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2030년까지 2,872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프로젝트를 단일 기금으로 통합함
- 현재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량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는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재정비전 2050을 개발하고 있음

Presentation 4

• Natnarin Sutheesophon (Thailand)


- 태국은 파리협약 및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 연계 채

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녹색채권은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발행되어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사용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채권을 이르며, 적격성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함
-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위원회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 할당 및 관리되며, 할당에 대한 보고서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외부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Presentation 5

• Antonio Luis M. da Costa Soares (Timor-Leste)

- 동티모르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법률 및 제도, 예산조정, 재정관리, 공공조달, 자산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비상 상황과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데이터 부족과 운영에 대한 표준절차 부재, 기후 관련 지출감소 등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티모르는 2022년 인구조사를 통해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재난 대응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PFM 개혁을 통해 공공재정 부문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재무부,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발표]

■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과 국세청은 2022년 11월 4일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을 발표함¹⁾

- 세법 규정의 모호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행정 지침에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무부와 IRS가 발표할 행정지침 및 규정 관련 내용이 명시됨
 - 통합 환급, 소비세, 면제 조직, 일반 세금문제, 증여, 재산 및 신탁을 포함하여 미국 과세의 주요 영역별로 설명하고 있음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발표될 행정 지침은 다음과 같음

<표 1> '2022-2023 Priority Guidance Plan' 상의 지침 내용

공지일시	지침 내용
2023년 1월	역년 동안 처음 사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제한에 관한 지침 및 역년 중 처음 리스 한 차량 임차인의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
2023년 2월	2022년도 지출 주거비용 산정을 위한 지침
2023년 3월	과 납부된 세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지침
2023년 4월	역년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및 재생가능 전력 생산 공제를 위한 기준가격 발표
2023년 5월	석유 환급 공제 청구 결정에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 발표
2023년 6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세금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에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발표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캐나다 - 재무장관, 경제 활성화 조치 발표]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Chrystia Freeland는 2022년 11월 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안한 조치를 요약한 2022년 가을 경제성명을 발표함^{2), 3), 4), 5)}

-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캐나다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새로운 자사주 매입세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이 포함됨

1) IRS, "Current Year Priority Guidance Plan," <https://www.irs.gov/privacy-disclosure/priority-guidance-plan>, 검색일자: 2022. 11. 22.

2)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releases 2022 Fall Economic Statemen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government-of-canada-releases-2022-fall-economic-statement-making-life-more-affordable-and-building-an-economy-that-works-for-everyon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3) Government of Canada, "Making Life More Affordabl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making-life-more-affordabl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4) Government of Canada, "Jobs, Growth, an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2/11/jobs-growth-and-an-economy-that-works-for-everyone.html>, 검색일자: 2022. 11. 29.

5) IBFD, "Canada Proposes Stock Buyback Tax, Other Tax Measures in 2022 Fall Economic Statemen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04_ca_3.html, 검색일자: 2022. 11. 29.

- 2022년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두 배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 공제가 적용됨
 - 현재 GST 크레딧 수령 대상인 약 1,100명의 저소득·중산층은 자동으로 추가 지급금을 받게 됨
 - 자녀가 없는 독신 캐나다인은 추가로 최대 234캐나다달러,⁶⁾ 두 자녀 이상의 캐나다 부부는 최대 467캐나다달러⁷⁾를 수령하게 됨
- 2023년 7월부터 전년도 캐나다 근로자혜택(CWB)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CWB 선급금을 자동 지급할 계획임
 - CWB는 캐나다 최저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과세연도 말에 지급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CWB 대상자들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음
-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공기업의 모든 종류의 자사주 매입 순가치에 대해 기업수준(corporate-level)의 2% 세금 부과를 시행할 계획임
 - 세금이 제정되면 5년간 연방 세입이 약 21억캐나다달러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금부과를 위한 세부사항은 공개 예정임
- 2023년부터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자본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시행할

예정임

- 정부가 예시하는 특정 청정기술 분야에 사용된 적격 장비자본 비용의 30%에 대해 세액공제할 계획임
 - 태양광 발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 집중형 태양광, 풍력 및 수력을 포함한 발전 시스템
 - 배터리, 자기에너지 저장장치, 압축 공기에너지 저장장치, 수력 저장장치, 중력에너지 저장장치 등 운영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 산업용 무공해 차량 및 관련 충전 또는 연료 보급 장비
 - 활성 태양열 난방, 저탄소 열 장비
 - 세액공제를 통해 받은 환급금의 사용은 2023년 예산 집행일부터 가능하며, 제도는 2032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임
- 주택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제안함
 - 2022년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함
 - 해당 조치는 주택과 관련한 자재 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제안임
 -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 구성원을 위한 보조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연간 최대 7만 5천캐나다달러⁹⁾를 지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주택에 대한 외국인

6)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원임

7)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만원임

8)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745억원임

9)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08만원임



구매를 2년간 제한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2022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 발표]

■ 영국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Jeremy Hunt)는 2022년 11월 17일, 2022년 추계예산안(Autumn Statement)을 발표하였음^{10), 11)}

- 금번 예산안은 공공지출 삭감과 세수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물가상승 대응과 시장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 예산안은 300억파운드¹²⁾ 규모의 지출 삭감 방안과 250억파운드¹³⁾ 규모의 증세 방안을 담음

- 지난 9월,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50년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놓은지 두 달만에 영국의 국가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임

■ 증세안으로는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세

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함¹⁴⁾

-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세율을 인상하여, 2023년부터 전기 및 가스 업체에 적용되는 세율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¹⁵⁾

- 횡재세는 기존의 2025년 12월이 아닌 2028년 3월까지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임

- 이에 따른 횡재세 세수는 2023년에 140억파운드¹⁶⁾로 예상됨

- 또한, 2023년 4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¹⁷⁾ 이상에서 연소득 12만 5,140파운드¹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함

- 개인소득세 기본세율(20%)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 3만 7,700파운드¹⁹⁾는 2028년 4월까지 동결하기로 함

- 자본이득세의 연간 면제금액을 2023년 4월 6일부터 1만 2,300파운드²⁰⁾에서 6천파운드²¹⁾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

10) GOV.UK., *The Autumn Statement 2022 speech*, 2022. 11. 17.,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he-autumn-statement-2022-speech>, 검색일자: 2022. 11. 21.

11) IBFD, "United Kingdom - Adoption of OECD Pillar 2, Reduction of Additional Rate Threshold Headline Chancellor's Autumn Statement," 2022.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7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1.

12)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7조원임

13)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조원임

14)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Officially Publishes Text of Autumn Finance Bill," 2022. 11.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4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5

15)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to Extend Windfall Tax Until 2028, Raise Rate to 35%," 2022. 1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2.html, 검색일자: 2022. 11. 21.

16)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조 2,712억원임

17)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3,862만원임

18)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907만원임

19)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01만원임

20)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56만원임

21)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5만원임

- 2024년 4월 6일부터는 추가 하향하여 3천과
운드²²⁾로 조정될 예정임

- 영국 재무부는 또한 금번 예산안에서 OECD 필라 2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힘²³⁾
 -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그룹이 해외 사업에 대해 15% 미만의 유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할 것이며, 보충적으로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을 도입하여 대기업들이 영국에서 15% 미만의 유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입법안은 2023년 춘계예산안(Spring Finance Bill 2023)에 포함될 것이라고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벨기에 - 세법개정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10월 4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함²⁴⁾
 - 조세 관련 이자율 규정을 개정하여 법정이자율을 기초로 적용되도록 하고, 조세절차 기간, 이의신

청 기간 및 장부 등 보관 기간을 연장함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개정하여 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세 일반의 경우 미납세액 및 환급세액에 법정이자율(최소 4%, 최대 10%)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납세액 등은 법정이자율에 4%를, 환급가산금은 법정이자율에 2%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금융자산세, 유가증권세, 은행세, 보험세 또한 기존 민법상 이율(1.5%)에서 법정이자율(최소 4%, 최대 10%)이 적용될 예정임

<표 2> 벨기에 가산세 등 적용 이자율 개정 내용

구분	대상	기존 이자율	개정 이자율
조세 일반 (부가가치세 제외)	미납세액(지연납부 포함)	4~10%	법정이자율 (4~10%)
	환급세액	2%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지연납부 포함)	월 0.8%	법정이자율 + 4%
	낮은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이자율 + 2%
	환급 가산금에 대한 이자		

출처: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22)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7만원임
 23) IBFD, "United Kingdom; OECD - United Kingdom to Implement OECD Pillar 2 Proposal," 2022. 1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8_uk_1.html, 검색일자: 2022. 11. 21.
 24) dekamer, "Projet de Loi portant des dispositions fiscales et financières diverses," <https://www.dekamer.be/FLWB/PDF/55/2899/55K2899005.pdf>, 검색일자: 2022. 11. 14.;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 조세절차 기간을 3년, 4년, 6년, 10년의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조세절차 기간이란 조사, 부과, 징수, 이의신청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과세관청과 관련한 절차의 종료 기한을 정해놓은 것임
- 기존 3년(기본)으로 적용되던 기간 중 무신고·지연신고·불충분신고는 4년, 국외 거래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사안'은

10년의 기간을 도입함

■ 이의신청 기간 및 장부 등 보관 기간을 연장함

- 부과처분 또는 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부과처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경정처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장부, 명세서 등 문서 보관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표 3> 벨기에 조세절차 기간 개정 내용

구분	개정 기간	개정 적용 대상
기본	3년	-
신고 관련	4년	무신고·지연신고·불충분 신고
국외거래 관련	6년	- 기업 및 CbCR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 -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글로벌 포럼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에 의하여 비협력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에 설립된 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급의 미신고 - 조세조약 또는 'EU 이자 및 사용자 지침 (2003/49)'에 기초하여 원천징수 신고에 포함되는 면제·포기·경감 - 외국납부세액공제 - DAC6 기구(arrangement) 또는 최소 25,000유로 ¹⁾ 의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국가로부터 받은 정보
복잡한 사안	10년	- 혼성불일치 - 조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가공 기구(arrangement)로부터 미배분된 이익 -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 기구(arrangement) - 부동산세·과태료·미납부 원천징수세·근로 소득세의 징수

주: 1)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04만원임
출처: IBFD, "Government Submits Omnibus Tax Bill to Amend Statute of Limitations, Harmonize Tax Interest Rates," 2022. 10. 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10-06_be_1%23tns_2022-10-06_be_1, 검색일자: 2022. 11. 14.

■ [룩셈부르크 - 2023년도 예산안 발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10월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함²⁵⁾

- 개인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공제혜택 기준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과 관련하여 임대 부동산의 가속상각률을 인상하고, 역혼성체(reverse hybrid entity) 규정을 명확히 함
- 기타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조세 신고기한을 연장함

■ 개인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공제혜택 기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을 완화함

25) Chambre des Députés, "Projet de Budget 2023,"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33/174/267745.pdf>, 검색일자: 2022. 11. 14.; IBFD, "2023 Budget: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Salary Threshold for Expat Regime, Push Back Filing Deadlines," 2022. 10.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12_lu_2.html, 검색일자: 2022. 11. 14.

- 한부모가정 공제액을 1,500유로²⁶⁾에서 2,500유로²⁷⁾로 변경하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소득한도 기준을 3만 5천유로²⁸⁾에서 6만유로²⁹⁾로 인상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 요건인 최소급여액 기준을 10만유로³⁰⁾에서 7만 5천유로³¹⁾로 인하함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사·주거·교육 등 특정 비용 공제혜택이 제공되고, 교육 등 특례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급여액 기준을 완화함
- 법인과 관련하여 임대 건물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개정하고, 역혼성체 규정을 명확히 함
 -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신축된 임대 건물(또는 건물 일부)에 적용되었던 6%의 가속상각률을 4%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신축된 건물 및 최대 2개의 부동산에만 적용됨
 - 역혼성체 규정이 거주 관할국에서 과세 면제되는 관계기업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과세 면제는 룩셈부르크 도관 기업·기구의 분류 방식 차이로 인한 것이어야 함

다고 개정함³²⁾

- 규정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도관 기업·기구는 특정 조건하에 룩셈부르크 또는 다른 관할국(투자자의 관할국 포함)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거주 관계기업이 기업·기구를 실제로 간주하는 관할국에 소재한 기업·기구의 이익에 대한 의결권·이익 분배권 등의 최소 5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규정이 적용됨

- 기타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조세 신고기한을 연장함³³⁾
 - 경감 부가가치세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기존 가구용 기구에 적용되던 8%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전기 자전거의 판매, 대여 및 보수까지 확대함
 - 3%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명세서에 대하여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인도 시 적용됨

26)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7만원임

27)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6만원임

28)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56만원임

29)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325만원임

30)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862만원임

31)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96만원임

32) EY, "Luxembourg Draft Budget Law 2023 clarifies Reverse Hybrid Entity Rule," 2022. 10. 17., https://www.ey.com/en_gl/tax-alerts/luxembourg-draft-budget-law-2023-clarifies-reverse-hybrid-entity, 검색일자: 2022. 11. 14.

33) KPMG, "Luxembourg: Tax proposals in budget 2023, property tax reform," 2022. 10. 14.,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10/tnf-luxembourg-tax-proposals-in-budget-2023-property-tax-reform.html>, 검색일자: 2022. 11. 14.



- 2022회계연도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지방사업 소득세 및 2023회계연도의 부유세의 연간 신고 기한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독일 - 일회용 플라스틱 부담금 부과 법안 승인]

- 독일 정부는 2022년 11월 2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함^{34), 35)}
-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2019/904)을 이행하는 안으로 부과율과 부과기준은 하위 영에서 규정될 예정이고 향후 하원과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임
- 해당 부담금은 기타간접세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제조업체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함³⁶⁾
- 이 법안으로 2025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

조업체는 오염원인자 부과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기준 해의 전년에 유통시킨 플라스틱 양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37), 38)}

- 부담금의 부과 범위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언급된 모든 상품을 포괄함
 - 일회용 식품용기, 테이크아웃 식품 포장지, 음료용 컵 및 뚜껑, 플라스틱 캐리어백, 물티슈, 풍선, 담배필터 등
-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연방환경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시장에 출시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종류와 양을 보고해야 함
 - 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잘못 신고하는 등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을 압수하는 등의 제재를 받음
- 연방환경청은 ‘일회용플라스틱기금’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 폐기물 재활용, 공공장소 청소, 소비자 인식제고 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게 됨³⁹⁾

34) IBFD, Germany Plans Levy on Single-Use Plastics From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6_de_1.html, 검색일자: 2022. 11. 25.

35)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Einwegkunststoff-Fondsgesetz liegt im Kabinett,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919000>, 검색일자: 2022. 11. 25.

36) 독일 연방환경청(BMU), Einwegplastik und Zigarettenskippen in der Umwelt kosten Kommunen jährlich 700 Millionen Euro, <https://www.bmu.de/pressemitteilung/einwegplastik-und-zigarettenskippen-in-der-umwelt-kosten-kommunen-jaehrlich-700-millionen-euro>, 검색일자: 2022. 12. 5.

37) 독일 연방환경청(BMU), Referentenentwurf des Gesetzes zur Umsetzung bestimmter Regelungen der EU-Einwegkunststoffrichtlinie, <https://www.bmu.de/gesetz/referentenentwurf-des-gesetzes-zur-umsetzung-bestimmter-regelungen-der-eu-einwegkunststoffrichtlinie>, 검색일자: 2022. 11. 25.

38) EY, German Government releases draft legislation for a Single-Use Plastics levy in Germany, https://www.ey.com/en_gl/tax-alerts/german-government-releases-draft-legislation-for-a-single-use-pl, 검색일자: 2022. 11. 25.

39) 독일 연방환경청(BMU), Plastikverschmutzung hat künftig ihren Preis, <https://www.bmu.de/pressemitteilung/plastikverschmutzung-hat-kuenftig-ihren-preis>, 검색일자: 2022. 11. 25.

- 연방환경청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최대 연 450백만유로⁴⁰⁾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오스트리아 -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대한 이익부과금 도입 발표]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2년 11월 18일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대한 이익부과금의 도입을 발표함⁴¹⁾

- 이 조치는 EU 회원국들 간 화석연료산업의 잉여 이익에 대해 일시적인 별도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됨
- 이외에 전력공급자에 대해 가격 상한을 두는 조치도 병행되어 전력공급가격이 최대 MWh당 180유로⁴²⁾로 제한됨

■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 석유와 가스 기업들의 과거 4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대기여금은 2022년과 2023년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과세이익으로 계산됨

- 과거 4년(2018~2021년) 동안 발생한 연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40%의 부과금이 부과됨

-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입증되는 경우 관련 투자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음
- 부과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 부과됨

■ (전력 가격상한) 전력공급자가 공급하는 전력에 MWh당 180유로의 가격 상한을 설정함

- 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MWh당 180유로의 가격 상한이 적용됨
- 가격 상한은 2022년 12월 1일에 발효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스페인 - 초과이익세 법안 초안 수정]

■ 스페인 연립정부는 2022년 11월 18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과세 영향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세 법안 초안의 수정을 수락함⁴³⁾

-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11월 10일 제출된 법안 초안이나, 이후

40)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84억 6,650만원임

41) News IBFD, "Austria Proposes Windfall Profits Tax on Energy Companies," 2022. 11.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21_at_1.html, 검색일자: 2022. 11. 28.

42) 2022년 11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615원임

43) IBFD, "Spain - Spain Continues to Refine Windfall Profit Tax for Energy Companies(21 Nov.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21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정당 간 협상을 거쳐 경제위원회에서 타협안이 수용된 후 초과이익세 관련 사항도 함께 수정됨

- 초과이익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 및 에너지 요금 등 과세대상 범위가 일부 축소됨
- 스페인 내 사업 활동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세를 부과함
- 계약 등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설정된 시장요금을 적용받은 매출액에만 초과이익세의 대상이 됨
 - 수요 및 공급에 따라 매일 가격이 변경되는 최대 전력 계약 10kW 이하의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유럽중앙은행(Europe Central Bank, 이하 ECB)의 초과이익세 관련 경고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음⁴⁴⁾

- ECB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에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고자 함
- 또한 초과이익세의 세수는 고유가 해결을 위한 긴급 개입을 다룬 EU의 규정(Regulation (EU) 2022/1854)에 상응하는 목적에 사용되며, 은행의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번 초안 수정을 통해 에너지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초과이익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됨

-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그룹이 공제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50%로 제한하여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
- 스페인 영화 및 시청각자료 제작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제작자가 부담한 비용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변경함
 - 스페인 국내외 제작사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만유로에서 2천만유로로 인상함
 - 시청각 시리즈의 경우 1회 방영분마다 1천만유로의 공제한도가 발생함⁴⁵⁾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스페인 - 비거주자의 특정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과세]

■ 스페인 연립정부는 2022년 11월 10일 특정 거액자산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임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⁴⁶⁾

- 본 법안은 ‘에너지 임시 부담금 설정 및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 제안(122/000247)’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 특정 거액자산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조건을 충족

44)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14 Nov.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45) Congreso de Los Diputados, Serie B Núm. 271-5(18 November 2022) p. 116,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4/CONG/BOCG/B/BOCG-14-B-271-5.PDF, 검색일자: 2022. 11. 29.

46)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14 Nov.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하는 경우, 순부유세에 더하여 임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함

- 자산의 50% 이상이 스페인 부동산으로 구성된 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대량 보유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이때 EU 외 국가 또는 정보교환 계약 및 세금 징수가 적용되는 EEA 국가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스페인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 요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해당 지자체 또는 국가에 직접 납부한 순부유세 세액은 본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거주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순부유세, 거액자산부담금의 합산액이 총 과세 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이 있으나,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⁴⁷⁾
 - 부담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자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토지대장 기재 가치, 다른 과세 목적상 행정부가 결정하거나 확인한 가치, 부동산의

<표 4> 스페인 거액자산에 대한 임시 부담금 요율

자산 가치	요율
3,000,000유로 이상 ~ 5,347,998.03유로 이하	1.7%
5,347,998.03유로 초과 ~ 10,695,996.06유로 이하	2.1%
10,695,996.06유로 초과	3.5%

출처: IBFD, "Spain - Spain Proposes to Include Foreign Bank Branches in Windfall Tax Plan(14 Nov.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11-14_es_1, 검색일자: 2022. 11. 21.

취득 가치 또는 보수 중 큰 값)으로 결정됨

- 거액자산 임시 부담금은 승인 후 2개 과세연도의 매년 12월 31일에 적용됨
 - 법안이 승인되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되는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상황에 따라 부과금이 2개 과세연도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네덜란드 - 2023년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의제주거 소득 최종 수치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2년 11월 10일, 2023년 근로소득 세액공제(arbeidskorting) 및 의제주거소득(eigenwoningforfait)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⁴⁸⁾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⁴⁹⁾을 확정하고, 의제주거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임대가치 비율 등을 확정함
-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금액을 조정하고, 각 구간별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모든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소득 세

47) Spanish Property Insight, "Spanish Wealth Tax(Patrimonio)," <https://www.spanishpropertyinsight.com/tax-and-pensions/spanish-wealth-tax-patrimonio/>, 검색일자: 2022. 11. 29.
 48) News IBFD, "Netherlands Sets 2023 Employment Tax Credit, Rate of Imputed Income from Owner-Occupied Dwellings," 2022. 11.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1-11_nl_5.html, 검색일자: 2022. 11. 17.
 49) 네덜란드에서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임



<표 5> 네덜란드 2023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화

(단위: 유로)

근로소득 범위		근로소득세액공제	
2022년	2023년	2022년 ¹⁾	2023년
10,351 미만	10,740 미만	4.541% × 근로소득	8.231% × 근로소득
10,352~22,357	10,741~23,201	470 + 28.461% × (근로소득 - 10,351)	844 + 29.861% × (근로소득 - 10,740)
22,358~36,650	23,202~37,691	3,887 + 2.610% × (근로소득 - 22,357)	4,605 + 3.085% × (근로소득 - 23,201)
36,651~109,347	37,692~115,295	4,260 - 5.860% × (근로소득 - 36,650)	5,052 + 6.510% × (근로소득 - 37,691)
109,347 초과	115,295 초과	0	0

주: 1) 기초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 수령 연령 미만인 경우이며,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는 더 낮은 공제율이 적용됨

출처: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검색일자: 2022. 11. 17.

액공제율을 인상함

-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11만 5,295유로⁵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13만유로⁵²⁾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0.35%(현행 0.45%)의 임대가치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초과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35%를 적용하기로 결정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의제주거소득) 의제주거소득 산정 시, 부동산가치(Waardering Onroerende Zaken-waarde, WOZ-waarde)에 적용되는 임대가치 비율을 인하함

- 네덜란드는 소유한 거주주택에 대해, 임대를 했다면 통상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던 임대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에 적용되는 임대가치 비율을 인하함
 - 의제주거소득은 부동산가치에 임대가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됨
- 2023년부터 부동산가치가 120만유로⁵¹⁾(현행

[일본 - 2023년 도입 예정 탄소세 도입 연기]

■ 일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에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세 개정안의 도입을 연기함⁵³⁾

- 해당 조치는 최근 엔화 약세와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도입 예정 관련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 일본은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화석연료 배

50)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045만원임

51)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억 7,009만원임

52) 2022년 11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억 7,286만원임

53) Bloombergtax, "Japan Delays Carbon Tax Reform to Curb Living Cos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71PHNC000000?>, 검색일자: 2022. 11. 22.

출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환산량 톤당 289엔⁵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당초 일본은 도입 예정이었던 탄소세 개정안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수준에서 4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 - 석유 관련 황제세 및 디젤 등 연료 부담금 조정]

- 인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황제세를 인하했지만 디젤 및 항공 연료 수출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인상함⁵⁵⁾
 - 국내 산지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한 세금은 11월 2일부터 톤당 9,500루피⁵⁶⁾로 약 14% 인하됨
 - 항공연료 수출은 현재 3.5루피에서 리터당 5루피⁵⁷⁾의 세금을 부과함
 - 디젤 수출에 대한 관세는 현재 12루피에서 1.5루피의 도로인프라 비용을 포함하여 리터당 13루

피⁵⁸⁾로 인상됨

- 인도는 7월에 황제세를 도입한 이후 약 2주마다 황제세를 개정해 오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홍콩 - 국외원천소득면제제도(FSIE) 발표]

- 홍콩 정부는 2022년 10월 28일, 국외원천소득의 비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인 국외원천소득면제제도(FSIE,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를 발표함^{59), 60)}
 - 홍콩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왔으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함
 - 유럽연합(EU)은 2021년 10월 5일,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외원천소득면제를 지적하며 조세 비협조 관련 명단인 ‘제도개선 국가’에 홍콩을 포함시켰고 홍콩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세법개정을 예고하였음^{61), 62)}

54)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64원임

55) Bloombergtax, "India Cuts Windfall Tax on Local Oil, Raises on Diesel, Jet Fuel,"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VJ4L6K000000?>, 검색일자: 2022. 11. 22.

56)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4,280원임

57)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2원임

58) 2022년 11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1.12원임

59) Tax Notes International, Hong Kong Proposes New Foreign Source Income Exemption Regime(October 31, 2022)

60) 홍콩 세무국(稅務局, Inland Revenue Department),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https://www.ird.gov.hk/eng/tax/bus_fsie.htm, 검색일자: 2022. 11. 16.

61) IBFD, Hong Kong Government Responds to Inclusion in EU's Watchlist on Tax Co-Oper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10-06_hk_1%23tns_2021-10-06_hk_1, 검색일자: 2022. 11. 16.

62)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금융재정정책] EU 집행위, 조세 비협조 관련 명단 발표, https://nma.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345241&page=1, 검색일자: 2022. 11. 23.



- 다국적기업그룹(MNE, Multinational Enterprise)에 속한 홍콩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이 적용대상이며 과세대상 수동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및 지분 처분소득, 지적재산권(IP) 관련 소득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동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됨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대상 기업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갖추어야 함
 - 경제적 실질이란 기업이 직접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수동소득 원천 자산의 주요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적절한 인원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주식 및 지분 처분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대상 기업이 경제적 실질을 갖추어야 하고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함
 - 투자기업은 홍콩 거주자이거나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일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것
 - 피투자기업의 수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지적재산권(IP) 관련 소득은 적격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 전체 R&D 비용 중 적격 R&D 비용 비율만큼 비과세됨
 - 적격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및 특허권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을 뜻함
 - 적격 R&D 비용이란 특정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R&D 비용으로 기업이 홍콩 내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의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호주 - 2022/23년도 예산안 발표]

■ 호주 재무부는 2022년 10월 25일, 2022/23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63), 64), 65)}

-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금번 예산안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밝힘

■ 금번 예산안의 주요 조세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⁶⁶⁾

- 우선 법인세 측면에서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와 관련하여, 부채비율(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에 기반한 현행 과소자본 한도 기준

63)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2-2023: Australia Announces Changes to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Measures to Limit Tax Deduction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Multinationals," 2022. 10.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 검색일자: 2022. 11. 16.

64) Tax Notes, "Australian Budget Focuses on Corporate Taxes, Compliance Efforts," Volume 108, p. 583

65) 호주 정부, "Budget October 2022-23," 2022.10.25., <https://budget.gov.au/index.htm>, 검색일자: 2022. 11. 16.

66) 호주 재무부, "Budget October 2022-23," 2022.10.25. p. 14~, https://budget.gov.au/2022-23-october/content/bp2/download/bp2_2022-23.pdf, 검색일자: 2022. 11. 16.

을 신규 소득기반 한도로 변경할 예정임⁶⁷⁾

- 이에 따라 차입금 이자 공제는 EBITDA의 30%까지로 제한될 예정임
- 공제가 부인된 차입금 이자의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이 가능함
- 상기 변경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일정 금액 미만의 전기차에 대한 Fringe Benefits Tax(FBT)를 면제함
 -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고, 첫째 소매 판매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배터리 전 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hydrogen fuel cell)와 Plug-in Hybrid 전기차에 대한 FBT와 수입 관세를 면제함
-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연 2억호 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조세회피 특별전담반(Tax Avoidance Taskforce)을 구성해 다국적 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금번 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음
- 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67)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2-2023: Australia Announces Changes to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Measures to Limit Tax Deduction and Increase Transparency of Multinationals," 2022. 10.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10-26_au_1.html, 검색일자: 2022. 11. 16.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¹⁾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2022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2. 11. 11.)²⁾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GDP 성장률은 2022년에 각각 3.2%, 3.3%이며, 2023년은 유로지역과 EU 둘 다 0.3%로 하락 전망

* 여름 전망(7월 발표)에서 유로지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각각 2.7%, 2.6%에서 2023년 1.5%, 1.4%로 전망하였음

-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이후 특히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높은 에너지 가격, 가계 구매력 하락, 외부환경 약화와 자금 경색으로 인해 유로지역 및 EU 대부분의 회원국이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를 보일 전망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상승률(HICP³⁾)은 2022년에 각각 8.5%, 9.3%에서 2023년에 6.1%, 7.0%로 감소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높은 가스 및 전기 도매가격이 반영되어 여름 전망 대비 2022년 1%p, 2023년 2%p 이상 상향 조정
- (노동) 2022년 상반기 경기 확장으로 200만명이 추가 고용되는 등 노동시장은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도 노동시장 회복력이 유지될 전망
 - 고용률과 노동참여율이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이며, 9월 실업률은 6.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재정)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에너지 지원 대책이 재정 부담 증가 요인
 - (재정수지) 유로지역과 EU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 대비 2022년 3.5%, 3.4%에서 2023년 3.7%, 3.6%로 소폭 증가 전망
 - 2022년 강력한 명목 성장률과 팬데믹 관련 지원의 단계적 중단으로 인해 EU 재정적자가 2020년 6.7%, 2021년 4.6%에서 개선되었으나, 2023년에 정부의 재량 조치 확대

1) EU의 경제·재정 정책의 조정 및 감독에 대한 연간 순환 과정으로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율에 맞추어 조정함

- European Semester의 주요 과정
 - 준비단계(전년 11, 12월) Autumn Package - 연간 지속가능한 성장 조사, 경고체계보고서, 유로지역 회원국 예산안 평가, 유로지역에 대한 권고안 등 발표
 - 정책지침(1~3월) Winter Package - 심층검토, 국가별 보고서 등 발표
 - 국가별 목표, 정책, 계획(4~7월) 회원국별 국가개혁 프로그램,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 Spring Package
 - 국가별 정책권고, 안정성장협약 관련 주요 결정 발표
 - 실행(7월~연말) - 유로지역 회원국별 차년도 예산 계획 제출

2) EU 집행위, "Autumn 2022 Economic Forecast: The EU economy at a turning point," 2022. 11. 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82, 검색일자: 2022. 11. 15.

3)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표 1>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벨기에	2.8	0.2	1.5	10.4	6.2	3.3	5.8	6.4	6.3	-5.2	-5.8	-5.1
독일	1.6	-0.6	1.4	8.8	7.5	2.9	3.1	3.5	3.5	-2.3	-3.1	-2.6
에스토니아	-0.1	0.7	2.1	19.3	6.6	2.6	6.1	6.6	6.2	-2.3	-3.7	-3.3
아일랜드	7.9	3.2	3.1	8.3	6.0	2.8	4.4	4.8	5.0	0.2	0.8	1.2
그리스	6.0	1.0	2.0	10.0	6.0	2.4	12.6	12.6	12.1	-4.1	-1.8	-0.8
스페인	4.5	1.0	2.0	8.5	4.8	2.3	12.7	12.7	12.6	-4.6	-4.3	-3.6
프랑스	2.6	0.4	1.5	5.8	4.4	2.2	7.7	8.1	7.7	-5.0	-5.3	-5.1
이탈리아	3.8	0.3	1.1	8.7	6.6	2.3	8.3	8.7	8.5	-5.1	-3.6	-4.2
키프로스	5.6	1.0	1.9	8.0	4.2	2.5	7.2	7.2	6.9	1.1	1.1	1.6
라트비아	1.9	-0.3	2.6	16.9	8.3	1.3	7.1	8.1	7.9	-7.1	-3.4	-1.3
리투아니아	2.5	0.5	2.4	18.9	9.1	2.1	6.0	7.1	7.0	-1.9	-4.4	-1.8
룩셈부르크	1.5	1.0	2.4	8.4	3.8	3.1	4.7	5.1	4.9	-0.1	-1.7	-0.5
몰타	5.7	2.8	3.7	6.1	4.0	2.4	3.2	3.1	3.0	-6.0	-5.7	-4.4
네덜란드	4.6	0.6	1.3	11.6	4.2	3.9	3.7	4.3	4.3	-1.1	-4.0	-3.1
오스트리아	4.6	0.3	1.1	8.7	6.7	3.3	5.0	5.2	5.3	-3.4	-2.8	-1.9
포르투갈	6.6	0.7	1.7	8.0	5.8	2.3	5.9	5.9	5.7	-1.9	-1.1	-0.8
슬로베니아	6.2	0.8	1.7	9.2	6.5	3.5	4.1	4.3	4.1	-3.6	-5.2	-2.7
슬로바키아	1.9	0.5	1.9	11.8	13.9	3.6	6.3	6.4	6.4	-4.2	-5.8	-4.7
핀란드	2.3	0.2	1.4	7.2	4.3	1.9	7.0	7.2	6.9	-1.4	-2.3	-2.3
Euro area	3.2	0.3	1.5	8.5	6.1	2.6	6.8	7.2	7.0	-3.5	-3.7	-3.3
불가리아	3.1	1.1	2.4	12.8	7.4	3.2	5.2	5.2	5.3	-3.4	-2.8	-2.5
체코	2.5	0.1	1.8	15.6	9.5	3.5	2.7	3.3	3.6	-4.3	-4.1	-3.0
덴마크	3.0	0.0	1.3	7.9	3.7	2.0	4.5	5.5	5.6	1.8	0.5	0.4
크로아티아	6.0	1.0	1.7	10.1	6.5	2.3	6.3	6.3	5.9	-1.6	-2.4	-2.7
헝가리	5.5	0.1	2.6	14.8	15.7	3.9	3.6	4.2	4.2	-6.2	-4.4	-5.2
폴란드	4.0	0.7	2.6	13.3	13.8	4.9	2.7	3.0	3.1	-4.8	-5.5	-5.2
루마니아	5.8	1.8	2.2	11.8	10.2	6.8	5.4	5.8	5.4	-6.5	-5.0	-4.8
스웨덴	2.9	-0.6	0.8	8.1	6.6	1.8	7.2	7.6	7.8	0.2	0.2	0.0
EU27	3.3	0.3	1.6	9.3	7.0	3.0	6.2	6.5	6.4	-3.4	-3.6	-3.2
영국	4.2	-0.9	0.9	7.9	7.5	2.9	3.8	4.4	4.8	-6.4	-4.4	-3.7
중국	3.4	4.5	4.7	:	:	:	:	:	:	:	:	:
일본	1.7	1.6	1.2	2.5	3.1	1.8	2.7	2.5	2.5	-6.9	-4.7	-3.4
미국	1.8	0.7	1.7	7.9	3.4	2.3	3.7	4.1	4.4	-5.9	-6.7	-7.1
세계	3.1	2.5	3.1	:	:	:	:	:	:	:	:	:

주: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2*, 2022, Table 1. 일부 발췌



다시 증가될 전망

- (국가채무) 유로지역과 EU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21년 각각 97.1%, 89.4%에서 2024년 91.4%, 84.1%로 개선 전망

●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추가 경제 혼란 가능성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가스 공급 부족(특히 2023~24년 겨울)이 가장 큰 위험요소

- EU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원자재시장 추가 충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 지속과 고금리에 대응하는 무질서한 세계 금융시장 조정도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

- 재정지원 확대가 디스인플레이션 목표에 역행할 위험이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목표 간의 잠재적 불일치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

■ EU 이사회·의회, 2023년 EU 연간 예산 합의 (2022. 11. 14.)^{4), 5)}

● (규모) 확정된 2023년 예산은 승인기준 1,866억 유로, 지출기준 1,686억유로⁶⁾

-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14%, 1.0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내용⁷⁾)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하고, 친환경, 디지털 전환, 보다 회복력 있는(resilient) 유럽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며, 이웃과 전 세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자 함

- 인근국 지원, 개발원조 및 국제협력(NDICI)에 147억유로 지원

- 경제, 사회 및 지리적 통합에 629억유로 지원

- 유럽 농어민 지원, 농수산 부문 회복력 강화,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농업 정책에 536억유로 편성

- Horizon 유럽 연구 프로그램에 124억유로를 편성하여 연구(건강, 디지털, 산업, 우주,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 등의 분야)를 지원

<표 2> 2023년 EU 확정 예산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48	20,901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587	58,059
3. 천연 자원과 환경	57,259	57,456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3,038
5. 안보 및 국방	2,117	1,208
6. EU 주변국 및 세계	17,212	13,995
7. 유럽 공공 행정	11,311	11,311
기타 특수 기금	2,855	2,680
합계	186,617	168,649
(EU27 GNI 대비 %)	(1.14%)	(1.03%)

주: 기타 특수 기금은 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SEAR),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EGF), Brexit Adjustment Reserve(BAR)임

출처: EU 집행위,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EU Annual Budget 2023," 2022. 11.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85, 검색일자: 2022. 11. 15.

4) EU 집행위,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EU Annual Budget 2023," 2022. 11.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85, 검색일자: 2022. 11. 15.

5)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3: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2. 11. 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1/15/eu-budget-for-2023-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2.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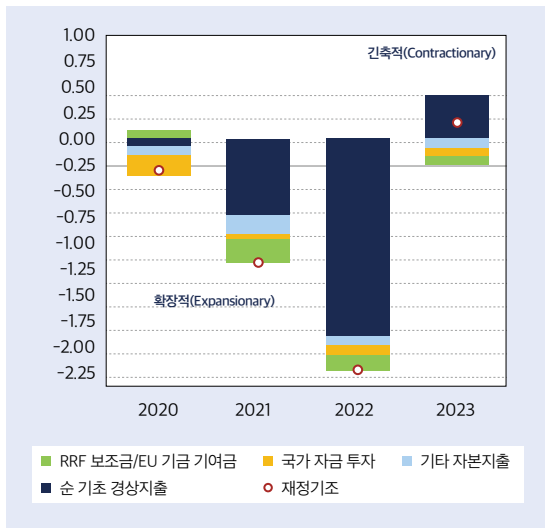
6) 승인기준(commitments)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급기준(payments)은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10월호, 2022. 참고

- EU 집행위,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3년도 재정계획안에 대한 평가 발표(2022. 11. 22.)⁸⁾
 - 유로 지역에 가입 예정(2023. 1. 1.)인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재정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집행위는 전반적으로 공공재정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
 - 2023년에 유로지역은 이사회 권고에 따라 중립

[그림 1] 유로지역의 재정기조(2020~2023년)

(단위: GDP 대비 %)



- 주: 1. 10년 평균 잠재성장률 대비 순 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 변화로 재정기조를 평가
 2. 순 기초지출 = 총지출 - 이자지출 - 주기적 실업수당 - 일회성 지출 -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3. (-)/(+)일수록 확장적/긴축적 재정 기조로 보며, 0에 가까운 수준을 중립적 재정기조로 평가

출처: EU 집행위, "2023 Draft Budgetary Plans-Overall assessment", Graph 2.5

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가격 변동과 에너지 지원 조치 연장 등으로 보다 확장적일 위험이 존재

- (에너지 지원책) 유로지역 에너지 지원 조치의 예산 비용(net budgetary cost)은 2023년에 GDP 대비 0.9% 규모로 추산
- (재정기조) 2020~2022년 확장적 재정 기조 이후 2023년에는 대체로 중립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그림 1] 참조)

- (고채무 회원국 평가) 높은 채무 수준의 국가들*은 신중한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기초 경상 지출(primary current expenditure)⁹⁾ 증가를 증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 (저·중채무 회원국 평가) 낮은 혹은 중간 채무 수준의 국가들*은 기초 경상 지출 증가를 증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권고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의 가을패키지의 일환인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ASGS) 발표

※ 지속가능 성장 조사는 내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2023년 European Semester(회원국의 경제 및 고용 정책 조정을 위한 프레임 워크)에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

8)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2023 Draft Budgetary Plans - Overall assessment," 2022. 11. 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3_en, 검색일자: 2022. 11. 15.

9) 기초 경상 지출은 순 기초 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에서 국가자금투자(nationally financed investment), RRF 보조금, EU 기금, 기타 자본지출을 제외



- (개요) 2023년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는 EU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회복력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을 강조
- EU의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competitive sustainability)'을 위해 ① 환경 지속가능성, ② 생산성, ③ 공정성, ④ 거시경제 안정성 증진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

<표 3> 2023년도 정책 우선순위 설정

구분	단기 정책 우선순위	중기 정책 우선순위
환경 지속 가능성	-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 -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유지	- 신속한 친환경 전환
생산성	- 순환 경제를 극대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촉진	- EU 단일시장(특히 서비스분야)의 심화(deepen)를 위한 구체적 노력 참여 -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개혁 개시
공정성	- 에너지 가격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 노동시장 유연화와 미스매치 해소에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시행 -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채택,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한 전환(fair transitions)
거시 경제 안정성	- 거시금융 안전성 보장 - 신용채널(credit channels) 유지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일관성	- 재정 지속가능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재정정책 설계

출처: EU 집행위, 2023 European Semester: 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를 바탕으로 작성



-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2022. 10. 27.)¹⁰⁾
 - (동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는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강력하게 반등했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여파는 약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수요 둔화 등의 여파에 직면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 또한 회복세를 늦추고 있음
 -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4.0%로 4월 전망치보다 0.9%p 하락하였으며, 2023년 전망치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4월 4.4%에서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23년(4.4%)과 2024년(4.5%)에도 5%를 밑돌 것으로 예측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1.7%에 머물다 2023년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와 민간 투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 이어 2023년 2.0%, 2024년 2.7%로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동남아 국가들은 국제 공급망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2022년 7%, 필리핀은 6.5%,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한 회복세를

10)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October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APAC/Issues/2022/10/13/regional-economic-outlook-for-asia-and-pacific-october-2022>, 검색일자: 2022. 10. 31.

보일 전망

- 태평양 제도 국가에서는 여행 규제 완화로 관광업에 기반을 둔 국가들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2022년 0.8%에서 2023년에는 4.2%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인플레이션) 2022년 3분기에 평균 4.2%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미국 달러화에 대한 통화 가치 하락 등에 의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통화 가치 하락은 아시아 전역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장기간 진행될 수 있음
- (위험) 세 가지 위험요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있으나 세계 경제에 비해 비교적 호재를 보이고 있음
 - 금융환경의 급격한 긴축으로 정부 차입비용이 상승하고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록 금융환경에 대한 압박이 예상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경제 활동을 급격히 둔화시키고 있어 아시아지역의 수출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수입량의 큰 폭의 감소가 특히 이웃 일본과 한국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음

- (정책권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 인플레이션 관리, 금융 안정성 관리 등에 힘써야 함
 -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금융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이미 국제수익률이 최저수준에 근접한 중국과 일본 제외)
 - 일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targeted)하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재정건전화 필요
 - 지정학적인 분쟁 확대를 피하고 무역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잠재적 생산 능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 개혁 필요



- 2022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22. 11. 21.)¹¹⁾
 - 2022년 3분기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독일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성장세 강화
 - 미국은 순수출¹²⁾의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0.1%에서 2022년 3분기 0.6%로 반등
 -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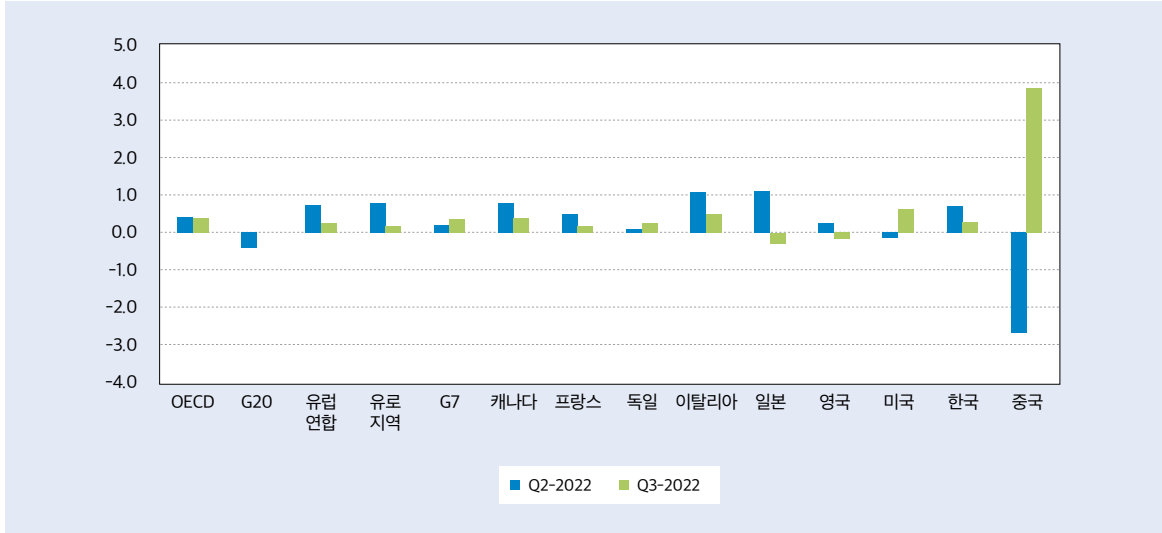
11) OECD, "GDP Growth-Third quarter of 2022," 2022. 11. 21., <https://www.oecd.org/sdd/na/g20-gdp-growth-Q2-2022.pdf>, 검색일자: 2022. 11. 22.

12) 상품수출 4% 증가, 상품수입 2.3% 감소



[그림 2]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 조정)

(단위: %)



출처: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1. 21.

<표 4> 2022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계절 조정)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누적 성장 (2019 Q4부터 2022 Q3까지)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9.4	1.0	0.8	1.7	1.2	1.3	0.3	0.5	0.4	3.7
G20	7.9	1.8	0.6	1.3	1.0	1.7	0.5	-0.4	-	-
유럽연합	11.6	-0.1	0.1	2.0	2.1	0.7	0.7	0.7	0.2	2.7
유로지역	12.4	-0.3	-0.1	2.0	2.3	0.5	0.6	0.8	0.2	2.1
G7	9.4	0.8	0.6	1.8	1.0	1.3	-0.0	0.2	0.4	2.5
캐나다	9.0	2.2	1.1	-0.8	1.3	1.6	0.8	0.8	0.4	2.1
프랑스	18.4	-0.9	0.1	1.1	3.3	0.6	-0.2	0.5	0.2	1.1
독일	9.0	0.6	-1.5	1.9	0.8	-0.0	0.8	0.1	0.3	0.2
이탈리아	14.5	-0.8	0.3	2.5	2.8	0.8	0.1	1.1	0.5	1.8
일본	5.3	1.7	-0.3	0.5	-0.6	1.0	0.1	1.1	-0.3	0.5
영국	16.6	1.2	-1.2	6.5	1.8	1.6	0.7	0.2	-0.2	-0.4
미국	7.9	1.0	1.5	1.7	0.7	1.7	-0.4	-0.1	0.6	4.2
한국	2.3	1.2	1.7	0.8	0.2	1.3	0.6	0.7	0.3	-
중국	3.2	2.4	0.8	1.4	0.4	1.3	1.6	-2.7	3.9	-

출처: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2," 2022. 11. 21.

- (2022년 2분기 0.1%)로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소폭 강화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성장세 둔화
 - 영국의 경우 순수출¹³⁾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내수 위축이 성장세를 크게 제약하여 2022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p 감소(2022. Q2, 0.2% → 2022. Q3, -0.2%)
 - 프랑스는 순수출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0.5%에서 2022년 3분기 0.2%로 둔화
 - 일본 역시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022년 2분기 1.1%에서 2022년 3분기 -0.3%로 크게 둔화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0.3% (2022년 2분기 0.7%)로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소폭 둔화

■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발표(2022. 11. 22.)^{14), 15)}

-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2023년 2.2%, 2024년 2.7%로 전망되며,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2023년 9.4%, 2024년 6.5%로 예상
- 2024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성

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긴축 통화정책 및 실질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가계소득 증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은 2022년 3.1%에서 2023년 2.2%로 둔화 예정

- (주요국 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2023년 둔화된 후 2024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경제성장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1.8%에서 2023년 0.5%, 2024년 1.0%로 전망
 - 높은 물가,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활동 약화, 실질임금 하락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 제약
 - (일본)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8%, 2024년 0.9% 전망
 - 높은 에너지 가격은 실질가계소득과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요 교역국가의 성장둔화로 수출 성장 억제
 - (유로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및 외부 수요 약세로 2022년 말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3.3%에서 2023년 및 2024년 각각 0.5%,

13) 상품수출 14.7% 증가, 상품수입 5.0% 감소

14)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2: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2. 11. 22.,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november-2022/>, 검색일자: 2022. 11. 23.

15)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6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1.4%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은 높은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계속되는 공급병목 현상, 건축 통화정책 등으로 둔화 전망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8%, 2024년 1.9%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2022년 5.2%, 2023년 3.9%, 2024년 2.3%로 점진적 완화 전망

- 민간소비 제약의 요인은 고(高)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부진
- 수출의 경우 반도체 경기 하락, 글로벌 수요

<표 5> 세계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1	2022	2023	2024	2022 Q4	2023 Q4	2024 Q4
실질 GDP 성장률¹⁾								
세계 ²⁾	3.4	5.9	3.1	2.2	2.7	2.0	2.3	3.0
G20 ²⁾	3.5	6.2	3.0	2.2	2.7	2.0	2.2	3.0
OECD ²⁾	2.2	5.6	2.8	0.8	1.4	1.2	0.9	1.8
미국	2.4	5.9	1.8	0.5	1.0	0.2	0.3	1.6
유로 지역	1.9	5.3	3.3	0.5	1.4	1.4	0.7	1.7
일본	0.8	1.6	1.6	1.8	0.9	2.0	1.2	0.7
한국		4.1	2.7	1.8	1.9			
Non-OECD ²⁾	4.4	6.2	3.4	3.3	3.8	2.7	3.6	4.0
중국	6.8	8.1	3.3	4.6	4.1	4.4	4.5	4.0
인도 ³⁾	6.8	8.7	6.6	5.7	6.9			
브라질	-0.4	4.9	2.8	1.2	1.4			
실업률 ⁴⁾	6.5	6.2	5.0	5.3	5.5	5.0	5.5	5.5
인플레이션¹⁾								
G20 ^{2),5)}	3.0	3.9	8.1	6.0	5.4	8.0	5.5	5.5
OECD ^{6),7)}	1.6	3.8	9.4	6.5	5.1	9.6	5.5	5.1
미국 ⁶⁾	1.4	4.0	6.2	3.5	2.6	5.5	3.1	2.3
유로 지역 ⁸⁾	0.9	2.6	8.3	6.8	3.4	9.6	4.9	2.9
일본 ⁹⁾	0.9	-0.2	2.3	2.0	1.7	3.2	1.4	1.9
한국		2.5	5.2	3.9	2.3			
재정수지 ¹⁰⁾	-3.2	-7.3	-3.7	-3.6	-3.1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¹⁾	3.4	10.0	5.4	2.9	3.8	2.4	3.2	4.0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6)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7)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개인소비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8)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9) COICOP 2018 분류 기준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0) GDP 대비 %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2, 2022. 11. 22., p. 15, Table 1.1. 재구성



지 지원 정책의 단계적 폐지 예상

- (일본)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의 만료 등으로 2023년 재정기조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 재정수지 2023년 -5.9%, 국가채무 250.6% 전망
- (한국) 재정 건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편적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취약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필요
 - 재정수지는 2022년 및 2023년 각각 0.7%, 0.9% 예상되며,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 49.3%, 2024년 48.9%로 점차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3년 3.9%, 2024년 2.3% 예상

• 재정준칙 채택,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시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권고

- (중국) 2021년 말 이후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의 두 차례 인하 등 통화정책은 필요한 유동성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정책은 세금 삭감 및 예비비(reserve funds) 지출의 형태로 지속될 전망

● (위험요인) 에너지 및 식량 공급 차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

- (에너지) 에너지 공급 차질은 중요한 하방요인이며, 유럽의 천연가스 확보와 수요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철 수급난 심화 예상
- (금리) 금리 상승은 기업, 정부, 가계의 채무상환에 악영향

- (식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가격,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 세계 취약계층은 식량 수급 불안정의 위협에 직면

● (정책권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잠재적 성장 촉진 및 포용적인 회복 달성을 위한 고용 촉진 등을 권고

- (재정 및 통화)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하에서 통화정책과 긴밀한 연계 필요

- (에너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장려

- (무역)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양하고 정부의 시장 개방 및 국제무역의 흐름 유지 필요

- (고용) 잠재적 성장을 촉진하고 보다 포용적

<표 6> OECD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수지 ¹⁾					
미국	-14.9	-12.1	-4.1	-3.7	-3.7
일본	-9.0	-5.5	-6.7	-5.9	-4.3
영국	-13.1	-8.2	-6.2	-7.6	-6.8
유로지역	-7.1	-5.2	-3.7	-3.8	-3.1
프랑스	-9.0	-6.5	-4.9	-5.2	-4.7
독일	-4.3	-3.9	-2.7	-3.2	-2.2
중국	-6.9	-6.6	-6.6	-6.6	-6.8
한국	-2.7	-0.8	0.2	0.7	0.9
국가채무 ²⁾					
미국	133.3	126.2	121.9	121.9	122.3
일본	241.3	241.6	248.0	250.6	251.8
영국	152.0	145.6	142.6	145.9	149.9
유로지역	121.0	115.4	113.5	113.0	112.9
프랑스	146.2	138.4	138.6	140.1	141.9
독일	78.5	77.6	78.3	78.8	79.4
중국	-	-	-	-	-
한국	50.0	50.5	50.3	49.3	48.9

주: 1)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2) 일반정부 총 채무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전망 표 재구성, 2022. 11. 22.

인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 촉진이 필수적이며,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새로운 기술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권고



미국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및 경제전망 공개(2022. 11. 2.)¹⁷⁾

- FOMC 참석자(participants)¹⁸⁾들은 11월 1~2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최근 지표¹⁹⁾들이 지출과 생산의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계속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관련 수급 불균형,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광범위한 물가 압력을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위원(member)²⁰⁾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과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3.00~3.25% 수준에서 3.75~4.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는 누적된 긴축적 통화정책과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금융 상황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공공 보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금융 및 국제 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할 것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2. 11. 10.)²¹⁾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7%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 2022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9월(8.2%)에 비해 둔화
 -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 상승률도 각각 10.9%, 17.6%로 9월(식료품

17)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 11. 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1102a.htm>, 검색일자: 2022. 11. 9.

18)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19) 베이지북 10월호를 참고 바람

20)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21)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October 2022*, 2022. 11. 10.,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11. 11.;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October Consumer Price Index Report*, 2022. 11.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0/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october-consumer-price-index-report>, 검색일자: 2022. 11. 11.



- 11.2%, 에너지 19.8%) 대비 낮은 수준
- 식료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9월(6.6%)에 비해 하락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4%로 9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월 대비 근원 인플레이션은 0.3%로 집계



일본

[예산·결산 등]

-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및 FY²²2022 제2호²³ 추경예산 발표(2022. 10. 28., 2022. 11. 8.)²⁴

<표 7> FY2022 일반회계 추경예산(제2호) 규모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	78,170	1. 세수	31,240		
2.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34,863				
3.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54,956				
4.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75,472	2. 세외수입	6,731		
5. 향후 대비	47,400				
1) 코로나19 및 원유 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37,400				
2)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0,000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22,732		
소계(경제대책 관계 경비)	290,861				
6. 기타 비용	2,229	4. 공채금	228,520		
7.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전출	6,906			1) 건설공채	24,760
				2) 특례공채	203,760
8. 기본 경비 감액	-10,774				
합계	289,222	합계	289,222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2号)フレーム」,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a.pdf, 검색일자: 2022. 11. 9.

22) Fiscal Year 회계연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에 해당
 23) 2022년 5월 제1호 추경 편성. 원자재 가격상승과 엔저 등에 따른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물가 상승 등 종합대책'을 올해 4월 발표하고, 대책 시행을 위한 제1호 추경을 5월에 편성
 24)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20221108033406.html, 검색일자: 2022. 11. 9.; _____,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の概要,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b.pdf, 검색일자: 2022. 11. 9.; 내각부,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概要」, 2022. 10. 28.,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_gaiyo.pdf, 검색일자: 2022. 10. 29.; 수상관저, 新たな総合経済対策が目指すもの, 2022. 11. 1., https://www.kantei.go.jp/jp/keizaitaisaku_kishida/index.html, 검색일자: 2022. 11. 2.

<표 8>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규모

(단위: 조엔)

경제대책	재정지출	사업규모
I.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12.2	37.5
II.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4.8	8.9
III.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6.7	9.8
IV. 방재·감재, ¹⁾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10.6	10.7
V. 향후 대비	4.7	4.7
합계	39.0	71.6

주: 1)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 발생을 막고 피해를 감소

출처: 내각부, 「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概要」, 2022. 10. 28.,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2-2/20221028_taisaku_gaiyo.pdf, 검색일자: 2022. 10. 29.

- 올해 10월 28일 발표된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시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11월 8일 발표(<표 7> 참조)
 - (세입) 추경 세입은 총 28조 9,222억엔으로 세수 3조 1,240억엔,²⁵⁾ 세외수입 6,731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 2조 2,732억엔 및 공채금 22조 8,520억엔* 발행
 - * 건설공채 2조 4,760억엔, 특례공채 20조 3,760억엔²⁶⁾
 - (세출) 고물가·임금 인상 대응책 등을 포함한 경제대책 관계비로 29조 861억엔, 그 외 기타 경비 및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²⁷⁾ 전출 등 총 28조 9,222억엔 계상
 - (경제대책) 경제정책방향은 기시다 총리의 핵심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기조 아래

고물가-엔저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에 중점

- (규모) 총 재정지출은 39조엔, 총사업 규모로는 71.6조엔으로 편성(<표 8> 참조)

- 경제대책은 ①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②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창출력' 회복 및 강화, ③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확보, ⑤ 향후 대비로 구성 (<표 9> 참조)
 - 경제대책으로 실질 GDP 성장률 환산 4.6%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2%p 억제 효과를 기대

25) 2022년 세수 견적 약 3조엔 상향 조정(원천소득세 +14,110억엔 증가(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 8.3%), 소비세 +5,880억엔(증가율 2.7%), 법인세 +4,510억엔(증가율 3.4%) 등), (参考)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補正後予算額概算,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e.pdf, 검색일자: 2022. 11. 9.

26) (건설공채) 재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을 목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특례공채) 건설공채를 발행해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이외 세출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그 성질에서 "적자 국채"로 지칭

27)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이익 자금 등을 재원으로 공채 및 차입금 등 상환 및 이자 지불 목적의 특별회계



<표 9>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세부내용

(단위: 억엔)

경제대책	금액
I. 고물가 및 임금 인상 대응책	78,170
1.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자 지원	63,168
• 전기 요금 대책	24,870
• 도시가스 요금 대책	6,203
•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 조치	30,272
• 어업 경영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30
2. 에너지·식료품 등 위기에 강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	4,257
• LNG 안정 공급 강화 대책	236
•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3,849 ¹⁾
• 석유가스 판매업의 운송 관련 보조금 지원	153
• 국내 비료 생산 확대	110
• 콩·밀 등 작물 국산화	100 ¹⁾
3. 지속적인 임금 인상 촉진·중소기업 지원	10,745
• 중소기업 등 사업 재구조화 촉진 보조금/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7,800
• 자금 융통 지원	2,609
II. 엔화 약세를 활용한 '이익 창출력' 회복 및 강화	34,863
1.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 및 지역 활성화	24,055
• 인바운드 관광의 부활, 관광업 회복·고부가가치화 등	1,500
• 검역체제 강화	592
2. 엔화 약세를 활용한 경제 구조 강화	10,809
• 첨단반도체 생산기반 정비	4,500
•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	440 ¹⁾
• 공급망 대책	
- 중요 광물	2,158
- 공작기계	416
- 항공기소재	417
III. '새로운 자본주의' 가속화	54,956
1. '인적투자' 근본 강화 및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일체 개혁	11,313
• '인적투자' 패키지 5년간 1조엔으로 확대(2022~2023년 예산 포함 약 3천억엔)	832
• 고용보험 재정 안정	7,276
• 대학 등 기능 강화	3,002
2. 성장 분야 대담한 투자 촉진 ²⁾	40,552
1) 과학기술 혁신	
• 첨단 국제 공동 연구 추진 사업	501
• 생명공학(바이오혁신사업)	3,000
• 우주 개발	639
• 지역 핵심·특색 있는 연구 대학 강화·촉진 사업	2,000
• 경제 안보 중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	2,500
2) 스타트업 창업 가속화 ³⁾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환경 및 시스템 형성	1,500 ¹⁾

<표 9>의 계속

경제대책	금액
• 소규모기업 기술 혁신 연구 지원 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확충	2,060
• 딥테크 ⁴⁾ ·스타트업 지원 사업	1,000
3)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 그리노베이션 기금	3,000
•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700
• 축전지의 제조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	3,316
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 개발 사업	4,850 ¹⁾
• Beyond5G(6G) 연구개발 추진 기금 조성	662
•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800
• 마이 넘버 카드 보급 촉진	630
3. '포용 사회' 실현	3,091
• 출산·육아 지원금(임신·출생 신고 시 총 10만엔 상당의 지원금 지급, 동반 형태의 상담 실행(반주(奔走)형 상담)), 출산육아 일시금 증액 등)	1,267
• '신육아 안심 플랜'에 따른 보육 지원	349
IV.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외교·안보 환경 변화 대응 등 국민 안전 및 안심 확보	75,47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병상 확보 등)	15,189
• 백신 확보·접종 실시 및 체제 정비	12,072
• 코로나 대응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7,500
•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를 위한 5년 가속화 대책 추진(공공사업관계비)	12,502
• 재해 복구	5,144
• 자위대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의 대응	3,248
•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지원	1,140
• 아시아(ASEAN·서남아시아 등), 도서국,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 지원	1,022
• 어린이 안심·안전 대책 지원 패키지(스쿨버스 안전장치 지원 등)	234
V. 향후 대비	47,400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및 원유 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37,400
•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0,000
추경예산 추가 세출(일반회계)	290,861
추경예산 추가 세출(특별회계 대책 추경분 포함)	296,332

주: 1. FY 2022 추경예산(제2호)에는 「고물가 극복 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실행에 관한 국비 외에 광열수도요금 등 추가 재정수요(2,229억엔) 등을 계상

2. 상기 특별회계 대책 추경분 포함 296,332억엔에는 일반회계 추경 추가 세출 290,861억엔 외에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 2,863억엔, 노동보협특별회계 1,721억엔 등 포함

3. 표에 제시된 대표 정책사업들 외에 세부 정책들이 있음(V. 향후 대비 제외)

- 1) 다른 분류로 정리된 사업금액을 포함
- 2) 다른 분류에 정리된 사업을 합할 경우 약 6조엔
- 3) 다른 분류에 정리된 사업을 합할 경우 약 1조엔
- 4) 과학적 발견 및 혁신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선진 기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획기적인 기술 포함)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第2号)の概要, 2022. 11.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221108b.pdf, 검색일자: 2022. 11. 9.



[기타]

■ 내각부, 2022년 3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2. 11. 15.)²⁸⁾

● 전 분기 대비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은 -0.3%이고(연율 -1.2%), 명목 GDP 성장률은 -0.5%(<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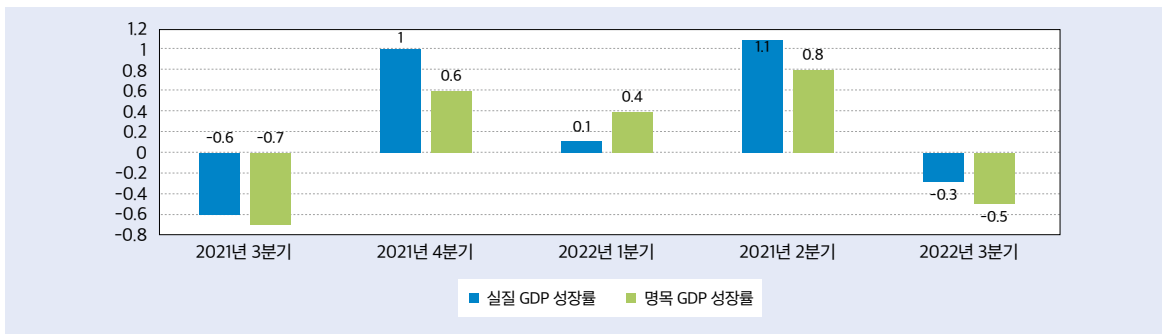
● (국내수요) 2022년 2분기 1.0%에서 0.6%p 감소한 3분기 0.4%

- (민간수요) 2022년 3분기 민간수요 성장률은

<표 10> 실질 GDP 및 명목 GDP 성장률 추이(전 분기 대비, 계절 조정)

(단위: %)

구분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0.6	1.0	0.1	1.1	-0.3
국내수요	-0.7	1.0	0.5	1.0	0.4
민간수요	-1.1	1.8	0.8	1.0	0.4
민간최종소비지출	-1.0	2.5	0.3	1.2	0.3
가계최종소비지출	-1.0	2.5	0.3	1.3	0.3
민간주택	-1.8	-1.4	-1.3	-1.9	-0.4
민간기업시설	-2.3	0.3	-0.1	2.4	1.5
민간재고변동(기여도)	0.2	-0.0	0.5	-0.2	-
공적수요	0.2	-1.0	-0.3	0.8	0.2
정부최종소비지출	1.2	-0.3	0.4	0.8	0.0
공적 고정자본형성	-3.6	-3.7	-3.0	1.0	1.2
공적 재고변동(기여도)	-0.0	0.0	-0.0	-0.0	-
총고정자본형성 ¹⁾	-2.5	-0.8	-0.9	1.5	1.2
순수출(기여도)	0.1	-0.0	-0.5	0.2	-
수출	-0.6	0.6	1.1	1.8	1.9
수입	-1.3	0.7	3.6	0.8	5.2
명목 GDP 성장률	-0.7	0.6	0.4	0.8	-0.5



출처: 내각부, 「2022년 7~9월 4분기 GDP 1차 속보치」, p. 1; p. 11, 2022.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28) 내각부, 「2022년 7~9월 4분기 GDP 1차 속보치」, 2022. 11.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2. 11. 17.

- 전분기 1.0%에서 0.6%p 감소한 0.4%
- (공적수요) 2022년 3분기 공적수요는 전분기 0.8% 대비 0.6%p 감소한 0.2%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실질 1.9%(2분기는 1.8%), 명목 5.0%(2분기는 7.6%), 재화·서비스의 수입은 실질 5.2%(2분기는 0.8%), 명목 11.4%(2분기는 11.9%)



독일

[예산·결산 등]

- 연방 재무부, 제163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²⁹⁾ 결과 발표(2022. 10. 27.)^{30), 31), 32)}
 - * 연방 정부의 2022년 가을 경제전망 주요 거시경제 수치를 기반으로 추계
 -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를 제외한 전망 기간('23~'27년) 동안의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난 추계(2022. 5.)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올해 예상 수익은 지난 5월 추계와 달리 1, 2차 구호패키지에 따른 재정적 영향이 추정치에

- 포함되어 크게 줄어들
- 2023년 실제 세수는 입법 과정에 있는 인플레이션 보상법³³⁾ 및 2022년 세법(Jahres-teuergesetz 2022)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감소할 것
- 총세수는 2027년까지 1조 1,148억유로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21년 8,332억유로를 기준으로 추정기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한 수치
 - 2020년 새롭게 시작된 재정조정제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연방 정부 세수가 총세수 증가율(6.5%) 대비 큰 폭(7.8%)으로 증가할 전망
 - 총세수에서 연방 정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39%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19년의 약 41%를 밑도는 수치
-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29) 독일의 세수추계는 일 년에 두 차례(통상 5월, 11월) 발표하며,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간사 역할을 맡은 연방 재무부를 비롯하여 연방 경제기후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1955년 예산안, 1968년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수추계결과를 연방 정부에 전달하였고 연방 재무부는 이를 직접 공표함(출처: 연방 재무부,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Estimate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Taxation/Articles/working-party-on-tax-revenue-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 11. 23.)

30)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10/2022-10-27-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2. 11. 8.

31) 연방 정부, "Lindner: Mehreinnahmen geben wir zurück," 2022. 10. 27.,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teuerschaetzung-lindner-2022-2138376>, 검색일자: 2022. 11. 8.

32)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Steuerschätzung vom 25. bis 27. Oktober 2022," 2022. 11.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11/Inhalte/Kapitel-3-Analysen/3-2-ergebnisse-steuerschaetzung-oktober-2022.html>, 검색일자: 2022. 11. 24.

33) 인플레이션 보상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8월호, "연방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상법 초안 발표(2022. 8. 10.)" 참고



<표 11> 제163차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방 정부	2022. 5월 추계	3,137 (10.8)	3,452 (10.1)	3,652 (5.8)	3,787 (3.7)	3,911 (3.3)	4,044 (3.4)	-
	2022. 10월 추계	3,137 (10.8)	3,380 (7.8)	3,697 (9.4)	3,903 (5.6)	4,100 (5.0)	4,241 (3.4)	4,382 (3.3)
주정부	2022. 5월 추계	3,551 (12.3)	3,751 (5.6)	3,884 (3.6)	4,029 (3.7)	4,157 (3.2)	4,299 (3.4)	-
	2022. 10월 추계	3,551 (12.3)	3,780 (6.5)	3,874 (2.5)	4,119 (6.3)	4,311 (4.6)	4,463 (3.5)	4,619 (3.5)
지방자치단체	2022. 5월 추계	1,262 (17.4)	1,274 (0.9)	1,331 (4.4)	1,401 (5.3)	1,463 (4.5)	1,518 (3.7)	-
	2022. 10월 추계	1,262 (17.4)	1,324 (4.9)	1,398 (5.6)	1,478 (5.7)	1,563 (5.7)	1,626 (4.0)	1,684 (3.6)
EU ²⁾	2022. 5월 추계	382 (16.5)	416 (8.9)	418 (0.5)	430 (2.8)	446 (3.7)	457 (2.4)	-
	2022. 10월 추계	382 (16.5)	393 (2.8)	404 (2.8)	430 (6.3)	445 (3.6)	456 (2.4)	463 (1.5)
총세수	2022. 5월 추계	8,332 (12.6)	8,893 (6.7)	9,284 (4.4)	9,647 (3.9)	9,978 (3.4)	10,317 (3.4)	-
	2022. 10월 추계	8,332 (12.6)	8,877 (6.5)	9,373 (5.6)	9,930 (5.6)	10,419 (4.9)	10,785 (3.5)	11,148 (3.4)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2~'27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3 Steuerschätzung, Anlage 1, 2를 참고하여 작성(2022. 10. 27.).^{34), 35)} 2022년 5월 추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연방 재무부, 제162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2022. 5. 12.)」 재인용

[기타]

긴급 지원 승인(2022. 11. 2.)^{36), 37), 38)}

■ 연방 정부, 12월 가스 및 열 에너지 가격에 대한

● 연방 정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2월 가스비를 지원

- 34) 연방재무부, “Ergebnis der 163.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vom 25. bis 27. Oktober 2022 in Dessau-Roßlau,”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3-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11. 14.
- 35) 연방재무부, “Abweichungen des Ergebnisses der Steuerschätzung November 2022 vom Ergebnis der Steuerschätzung Mai 2022,” 2022. 10.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3-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11. 14.
- 36) 연방 경제기후부, “Bundeskabinett verabschiedet Soforthilfe Dezember für Gas und Wärme,” 2022. 11. 2.,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11/20221102-bundeskabinett-verabschiedet-soforthilfe-dezember-fuer-gas-und-waerme.html>, 검색일자: 2022. 11. 14.
- 37) 연방 정부, “Soforthilfe für Haushalte und Unternehmen,” 2022. 11. 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forthilfe-dezember-2139268>, 검색일자: 2022. 11. 14.
- 38) 연방 경제기후부, “Soforthilfe Dezember: Anträge auf Erstattung oder Vorauszahlung jetzt möglich,” 2022. 11. 14., <https://www.bmwk.de/Redaktion/DE/Dossier/Soforthilfe-Energiepreise/soforthilfe-energiepreise.html>, 검색일자: 2022. 11. 16.

하기로 결정

-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보상하고 내년 예정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까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대책

- 일반 가정 및 연간 150만kWh 미만을 소비하는 소기업은 표준 사용액(2022년 9월 예측된 연간 소비량의 1/12)을 기준으로 12월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지원받음
- 연간 소비량과 관계없이 간호 및 재활 시설, 교육 기관, 과학 및 연구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에너지 공급자와 자체 계약은 없지만 부대비용 청구서를 받는 임차인을 위한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차등적 특례가 제공됨
- 경제안정화기금(WSF: 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을 통하여 연방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자금을 지원

■ 연방 정부, 가스 및 전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 통과(2022. 11. 25.)³⁹⁾

- 연방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 12월 일회성 긴급지원에 이어 1월부터 가스 및 열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까지 천연가스는 kWh당 12센트, 열에너지는 kWh당 9.5센트의 할인 가격을 적용⁴⁰⁾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2021년 연간 소비량의 70%를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kWh당 7센트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열에너지는 kWh당 7.5센트로 할인
 - (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추가로 80억유로의 특별원조기금 투입
-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2023년 3월부터 도입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
 - (가정 및 중소기업) 연간 소비 전력이 3만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에 전년도 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준량의 가격을 kWh당 40센트로 할인 적용⁴¹⁾
 - (산업계 대규모 소비자) 연간 소비 전력이 3만 kWh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소비량의 70%에 해당하는 기준량을 kWh당 13센트로 할인하여 공급
- 기준 소비량을 초과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한 절약 유인 효과도 있음

39) 연방 경제기후부, "Gas- und Strompreisbremse," 2022. 11. 25.,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Energie/strom-gaspreis-bremse.html>, 검색일자: 2022. 11. 28.

40) 가정용 가스요금은 8ct/kWh에서 22ct/kWh로 증가(경제기후부 에너지가격 상한제 계산 예시 참고)

41) 가정용 전기요금은 30ct/kWh에서 50ct/kWh로 증가(경제기후부 에너지가격 상한제 계산 예시 참고)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2-2) 발표(2022. 11. 2.)⁴²⁾

-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직면한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편성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9월

편성된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와 동일한 2.7%로 전망

- 비금융 기업의 투자 및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가계 소비가 회복

- (재정전망)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은 4.9%로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 및 2023년 예산법안 전망치보다 0.1%p 감소
- (주요 재정조치)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료가격 인하 지원,⁴³⁾ 고용훈련 지원정책 등이 반영
- 1,200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100~200유로의

<표 12> FY2022 2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 예산법 (A)	2022 1차수정 예산법 (B)	2022 수정전망 (2023 예산법안)	2022 2차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61.5	505.0	500.2	514.2	52.7	9.2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91.9	434.8	431.9	446.2	54.3	11.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9.6	70.2	68.3	67.9	-1.7	-2.3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7.7	335.3	345.1	340.5	32.8	5.2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7.6	311.6	314.3	315.8	28.2	4.2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2.4	85.3	86.9	87.4	5.0	2.1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0.0	56.8	55.2	59.0	19.0	2.2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8.2	18.1	16.8	18.0	-0.2	-0.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8.4	101.2	97.4	100.6	2.2	-0.6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48.6	50.2	58.0	50.9	2.3	0.7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0.2	23.7	30.8	24.7	4.5	1.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1	0.4	-3.5	1.0	1.1	0.6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3	0.3	0.3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153.8	-168.5	-158.5	-164.7	-10.9	3.8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2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2), 2022. 11. 2.

42) 프랑스 정부, "PLFR2 pour 2022-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2," 2022. 11.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2/plfr2-pour-2022>. 검색일자: 2022. 11. 14.

43) 에너지 바우처 및 연료가격 인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9월호, 2022, pp. 50~51 참고

- 에너지 바우처 지급에 총 14억유로
-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연료가격 인하에 총 40억유로의 재정 소요가 추산되며, 이를 위해 6천만유로 추가 할당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에 2억 7,500만유로 편성
- 농업 부문에 4억 5천만유로, 청년 고용훈련 지원 확대에 20억유로 추가 지원

[기타]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2022년 2차 수정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2. 11. 2.)⁴⁴⁾
 - (경제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예산법안의 전망과 동일한데, 2분기 말 이후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에너지 공급 중단 위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
 - (재정전망) 2023년 예산법안과 비교해 0.1%p 개선된 2022년 재정수지 전망은 타당한 전망이라 평가
 - (제언) 거시경제 또는 금융 충격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재정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출 통제 노력 필요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2년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 발표(2022. 11. 17.)⁴⁵⁾
 - (개요)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1월 17일에 생활비 부담에 취약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채무 및 정부 차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22년 가을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9월, 감세 조치를 포함한 ‘2022년 성장계획’ 발표 후 금융시장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철회하고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이 동반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가을보고서’ 형식으로 주요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통상 가을에 예정된 예산안(Budget) 발표는 내년 봄으로 연기
 - (경제전망) 예산책임청은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와

44)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Avis n°2022-6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n°2,” 2022. 11. 2.,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2-6-loi-de-finances-rectificative-ndeg2>, 검색일자: 2022. 11. 14.

45)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plan for stability, growth and public services,” 2022. 11. 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delivers-plan-for-stability-growth-and-public-services>, 검색일자: 2022. 11. 21.; _____, *Autumn Statement 2022*, 2022.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statement-2022-documents/autumn-statement-2022-html>, 검색일자: 2022. 11. 2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 11., https://obr.uk/docs/dlm_uploads/CCS0822661240-002_SECURE_OBR_EFO_November_2022_WEB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2. 3. 24.



<표 13> 영국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	전망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 성장률	7.5	4.2	-1.4	1.3	2.6	2.7	2.2
3월 전망 대비 차이	0.1	0.4	-3.2	-0.8	0.9	1.0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6	9.1	7.4	0.6	-0.8	0.2	1.7
3월 전망 대비 차이	0.0	1.7	3.3	-0.9	-2.7	-1.8	-
실업률(LFS)	4.5	3.6	4.1	4.9	4.7	4.3	4.2
3월 전망 대비 차이	0.0	-0.4	-0.1	0.7	0.6	0.2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 Table A.1.; A.2.

기업 투자가 둔화되면서 영국이 2022년 3분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영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22년에 4.2%, 2023년에 -1.4%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2024년에 1.3%로 나타날 전망

- 정부의 에너지 비용 및 생활비 지원이 없다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평가

- (물가) 2022년 4분기에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1%를 기록하고 연간 CPI 상승률은 2022년 9.1%에서 2023년에 7.4%로 하락할 전망

- (노동시장)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실업률은 2022년 3.6%에서 2024년에 4.9%까지 상승할 전망

- (재정전망)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지난 2022년 3월 전망과 비교해

<표 14> 영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39.0	40.2	41.6	41.7	41.4	41.2	41.1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44.7	47.3	47.2	44.9	44.2	44.0	43.4
재정적자 및 채무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5.7	7.1	5.5	3.2	2.8	2.9	2.4
공공부문 순채무(BOE 제외) (Public Sector Net Debt ex Bank of England)	84.3	89.9	95.9	97.2	97.6	97.6	97.3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2022., Table A.5.

중기 재정전망이 상당히 악화됨

- (재정수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채무이자 증가와 에너지 및 기타 생활비 지원 정책 비용으로 인해 FY2022-23에 7.1%로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
 - 이후에는 에너지 비용 지원 종료, 경기 회복, 가을보고서의 조세 증대 및 지출 축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순차입의 하락 추세가 예상됨
- (채무) FY2022-23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을 제외)는 전년 대비 상승한 89.9%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FY2025-26에 97.6%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주요 정책) 영국 정부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 안정, 성장, 공

공서비스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 계획을 발표

- (에너지 및 생활비 지원) 생활비 부담에 취약한 계층 보호하기 위해 약 260억파운드(FY2023-24 기준)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
 - (생활비 추가 지원) FY2023-24에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수급자(800만가구) 대상 추가 900파운드, 연금수급자(800만가구) 대상 추가 300파운드, 장애급여 수급자(600만명) 대상 추가 150파운드 지원
 -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 내년 4월부터 연간 에너지 요금의 가계 부담 상한을 3,000파운드로 보장하여 가구당 약 500파운드의 비용을 절감⁴⁶⁾
 - (에너지 효율 제고)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15% 감축 목표

<표 15>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계획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공공부문 경상지출	937.9	1,062.1	1,063.6	1,047.6	1,067.1	1,107.8	1,139.2
자원 AME	461.7	581.3	578.3	559.4	570.7	600.6	617.6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451.8	452.2	456.2	458.6	466.5	476.6	490.1
감가상각	24.4	28.6	29.2	29.6	30.0	30.7	31.5
공공부문 총투자	109.6	119.8	135.1	132.8	132.1	131.9	131.9
자본 AME	16.6	1.5	21.6	17.5	16.5	16.3	16.7
자본 DEL	93.0	118.3	113.6	115.2	115.6	115.6	115.2
총관리지출	1,047.5	1,181.9	1,198.8	1,180.3	1,199.2	1,239.7	1,271.1

주: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이며, AME(Annually Managed Expenditure)는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통제가 어려운 지출임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11., Table 2.3.

46) 영국은 에너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부과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을 제한하는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도입함. 에너지 요금 가계 부담 상한(표준가구, 평균 요금 기준)을 올해 연간 약 2,500파운드로 보장함에 따라 이번 겨울(2022. 10.~2023. 3.)에 가계 부담을 약 900파운드 절감하고 내년 4월부터 요금 상한을 3,000파운드로 적용하면 내년도(2023. 4.-2024. 4.) 가계 부담을 약 500파운드 절감할 전망



- 를 설정
- (연금 및 복지급여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근로연령 복지급여, 국가 연금 및 연금 크레딧을 10.1% 인상
- (Household Support Fund 연장) 추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을 10억 파운드 추가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2024년 3월 말까지 연장
- (법정 생활임금 인상) 2023년 4월부터 법정생활임금을 10.42파운드로 9.7% 인상
- (공공지출) 필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시설 등의 우선순위에 공공지출을 집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지출을 관리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자금지원을 FY2024-25에 최대 80억파운드 늘리고 FY2023-24와 FY2024-25에 추가 학교지원 예산을 각각 23억파운드 배정
- (지속가능한 공공지출) 공공재정 개선을 위해 FY2025-26 ~ FY2027-28의 부처 경상지출 증가율(실질 기준)을 연간 1%로, 부처 자본 지출은 현재 수준(현금 기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며 부처 예산의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도 추진
- (조세)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해 세수 증대

<표 16> 주요 조세 정책

구분	내용
개인 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구간 하한을 하향 조정(£150,000→ £125,140('23. 4.)) - 소득세 및 국가보험기여금 부과 최저 소득 기준 동결('28. 4.까지) - 소득세의 배당 공제 축소(£2,000→ £1,000('23. 4.)→ £500('24. 4.)) - 자본이득세 연간 비과세 금액 축소(£12,300→ £6,000('23. 4.)→ £3,000('24. 4.)) - 전기차 차량소비세 감면 폐지('25. 4.) 등
기업 과세	- 고용주 부담 국가보험기여금 부과 최저 소득 기준을 동결('28. 4.까지) - 국제 기준(필라 2)을 반영한 법인세 개혁 추진 - VAT 등록 면제 매출액 기준 추가 2년 동결('24. 4. ~ '26. 3.) - R&D 조세 감면 개혁
우발 이익 과세	- 석유·가스 기업에 부과하는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 연장('28. 3.까지) 및 세율 인상(25%→ 35%('23. 1.)) - 전력회사 초과 이익 부담금(Electricity Generator Levy) 45% 신규 부과('23. 1.~'28. 3.)
비주거 재산세 비용 지원	-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비용 지원(약 136억파운드 규모) · 비주거 재산세 납세자들에게 비주거 재산세 승수 ⁴⁷⁾ 를 추가 1년 동결 · 소매·접객·레저 부문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등
기타	- 지방당국이 주민 투표 없이 인상할 수 있는 카운슬세(council tax) 인상 폭 기준을 상향 조정 -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2, 2022. 11.; ____, "Chancellor delivers plan for stability, growth and public services," 2022. 11. 17.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7) 부동산 평가 가치에 승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승수는 전년도 승수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만 이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

- 조치를 추진하고 고소득자가 더 많은 몫을 기여하도록 과세(세부 정책 내용은 <표 16> 참조)
- (경제성장) 사람, 인프라, 혁신에 투자해 성장 및 생산성을 제고
 -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및 역량(skill) 개발 지원
 - 인프라(철도, 기가비트 광대역 통신,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R&D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FY2024-25까지 200억파운드로 확대
 - 규제 합리화를 통해 디지털, 녹색기술, 생명과학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지원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성장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라 단기에는 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성장이 회복되면 채무 축소를 위해 재정건전화 추진을 가속화
 - (재정건전화) 가을보고서에서 조세정책 결정으로 약 250억파운드를 확보하고 지출 정책 결정으로 약 300억파운드를 절감하는 550억 파운드 규모(FY2027-28 기준)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
 - 가을보고서의 정책 결정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FY2024-25부터 차입 감소가 시작될 전망
 - (재정준칙) 지난 재정준칙 목표 개정⁴⁸⁾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신규 재정준칙 목표를 제시
 - (채무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까지 감축
 - (재정수지준칙)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망 기간의 다섯 번째 연도에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복지지출 상한) 사전에 설정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존 준칙은 유지

48) 기존 재정준칙(2021년 가을예산안의 개정안)의 목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을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 경상이산수지는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까지 균형 달성,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5년 전망기간)이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 복지지출 한도 준수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 통권 제318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12월 15일 발행 / 제26권 제12호(통권 제31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